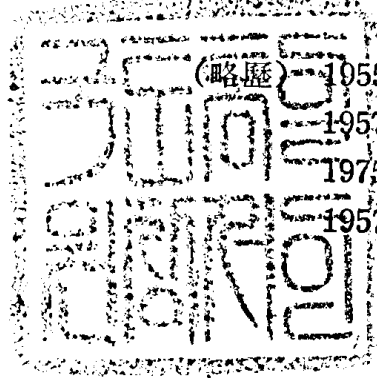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 調查 研究

北韓法에 關한 概說的 研究

研究執筆責任 (代表) 崔 達 坤



(略歷) 1955. 3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1957. 3 : 동대학원 (법학석사)
1975. 9 : 동대학 법학박사
1957. 9 - 현재 : 동대학교수

刊行責任 ²²¹ 李 世 震 (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 要 旨 〉

이 論文은 北韓法에 관한 概說을 그 目的으로 삼았다. 北韓의 法은, 그들 社會의 特性으로 말미암아, 韓國法과는 勿論 같은 社會主義國家인 朝鮮法과도 다르다.

그래서 이 論文에서는, 이러한 이해하기 힘들고 또 體系化되어 있지 않은 北韓法制度를 우선 體系化해 보고 아울러 各法이 가지는 特性을 要約해 보기로 하였다.

이 論文은 우선, 總論과 各論의 二分法을 따라, 總論에서는 北韓法의 理論的 基礎, 機能 그리고 特徵을 解說했으며, 다른 部門에서는 또 法의 體系 그리고 法의 源泉에 관한 問題를 集中的으로 說明했다. 各論部門에서는, 實定法 중 가장 基本되고 중요한 것들을 골라, 그들法이 가지고 있는 基本原理 및 구체적인 特徵 등을 찾아내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 各論部分에서는 國際法도 아울러 다룸으로써, 實定法을 해설하고자 하는 目的과는 완전히 一致되지 못하였으나, 그것은 北韓法體系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도우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첫째, 北韓法은 그동안 많은 變化가 있었다는 점이다. 즉 그들 政權이 樹立될 당시에는 朝鮮法理論 내지는 朝鮮法技術이 많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여졌으나, 근래에 와서는, 政治的으로 朝鮮과 敬遠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法의 領域에서도

그러한 傾向이 明白히 많아지고 있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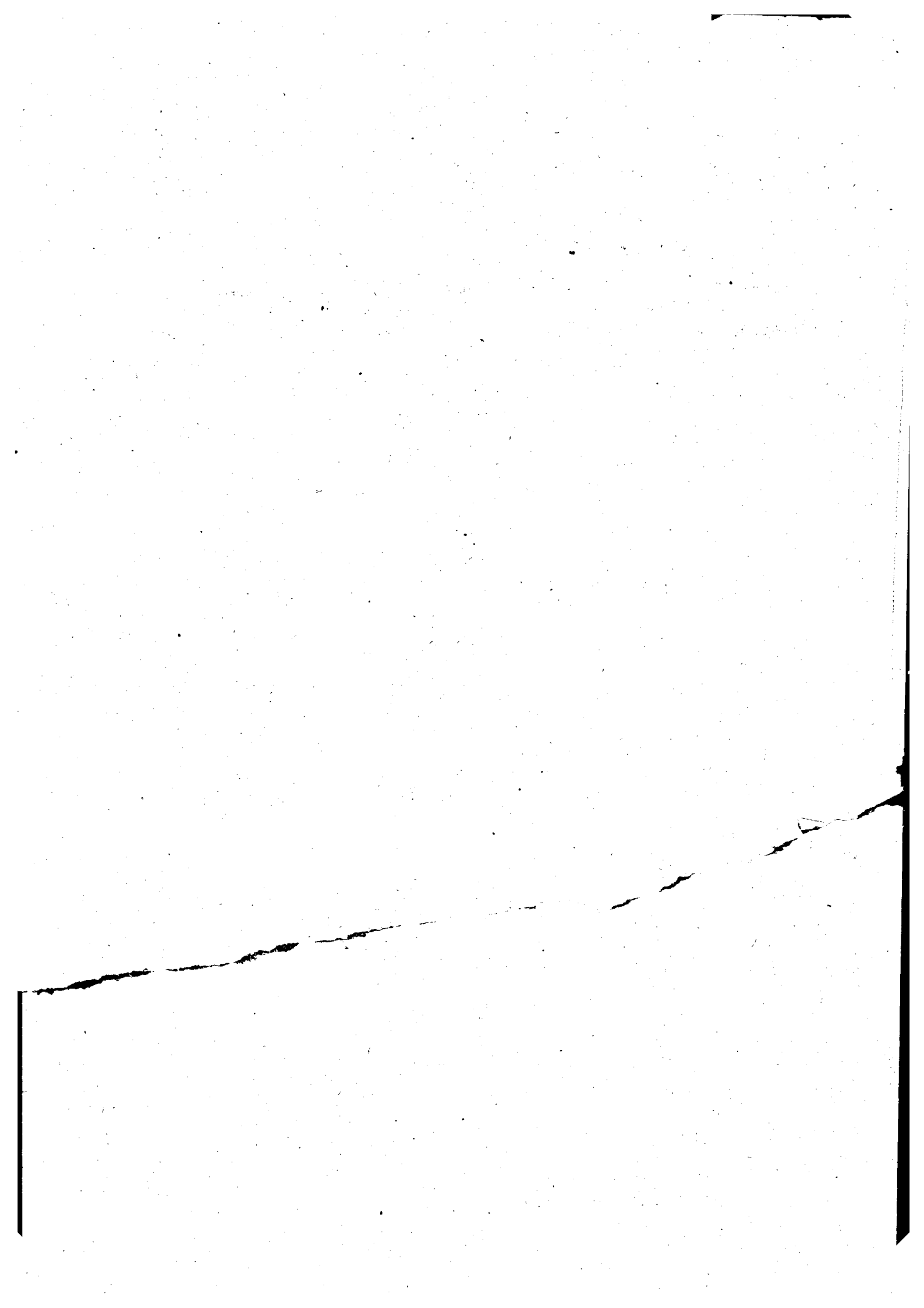
둘째, 소련法에서 벗어나서, 그들 특자의 法秩序를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意欲은, 오히려, 法の 制定이라든가 法体系의 確立을 위하여는 많은 志장을 恣意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겨우 어느정도 (소련式으로) 이루어 놓은 立法 또는 法理論이, 다시 基本的으로 흔들리기 때문이다.

셋째, 지금까지 公布되고 있는 成文法의 수는 꽤 많이 있으나, 아직까지 그 수는 法을 整備시킨 단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法の 空白을 메꾸어주는 "法意識"이 法源으로 차지하는 範圍가 매우 넓다.

네째, 요즘 강조되고 있는 主体思想의 實踐이라는 課業과는 關係없이, 北韓法의 具體적인 規定들은 두가지 種類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 하나는 소련法的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比較的 北韓獨自의인 것이다. 이러한 性向은 個別的인 規定에서 뿐만 아니라, 制定된 單行法等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土地法이나 農業協同組合法 등이 後者の 부류에 속하고 訴訟法을 비롯한 各種의 技術的인 規定들이 前者의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數的으로 볼때 前者가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점에서 소련法의 影響은 아직 매우 크며, 따라서 소련法에 관한 研究는 北韓法을 이해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자리를 굳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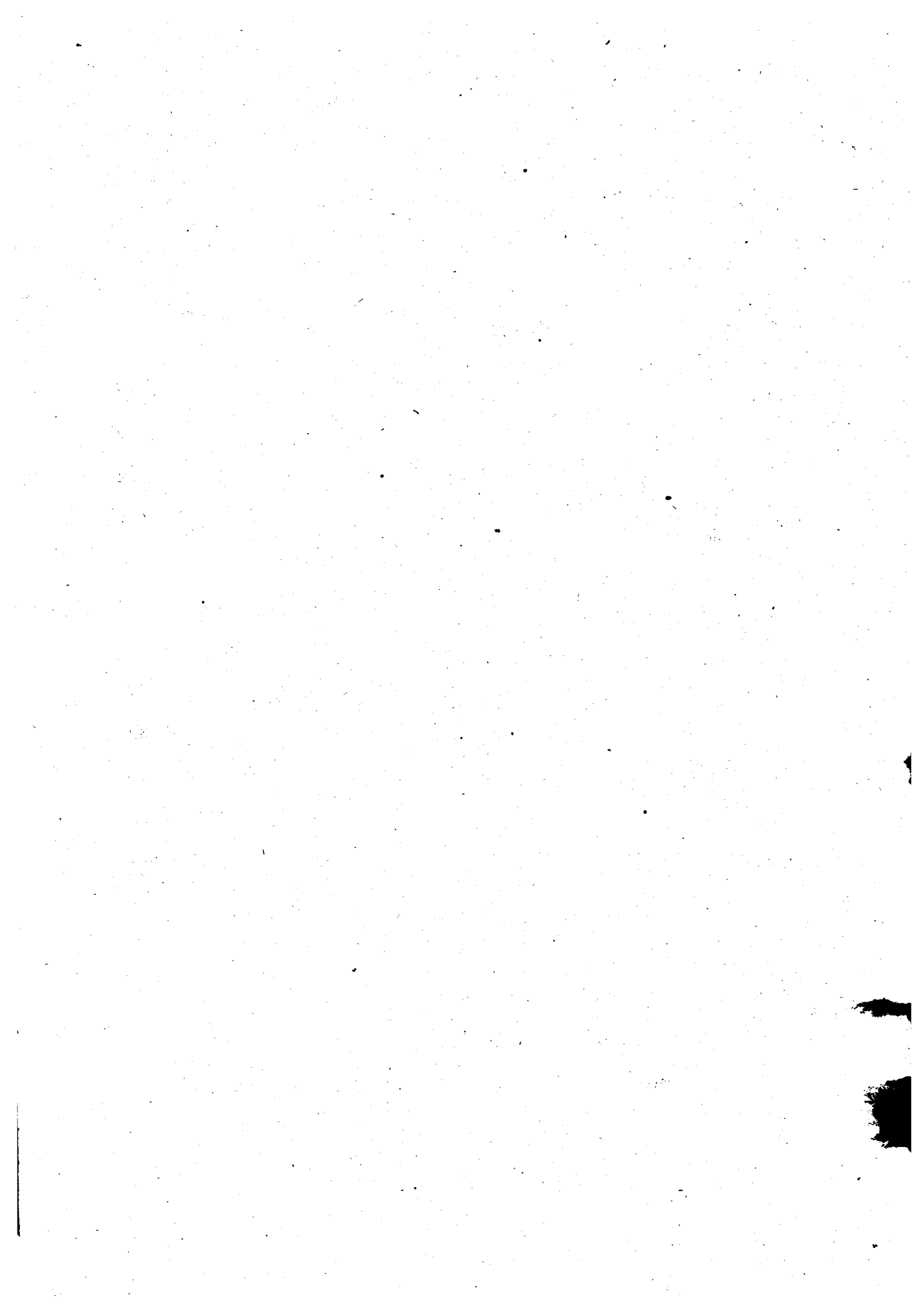
이상에 내어 건 여러가지 특성으로 인하여, 北韓法의 正確한 파악은 결코 쉬운 作業이 아니며, 따라서 이에 관한 正確한 파악은

北韓社會의 變化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거기서 얻어진 結果를 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基準으로 삼을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 차 례 >

머릿말	7
第1章 總論	9
第1節 北韓法의 理論的基礎와 機能 및 特徵	9
I. 北韓法의 理論的基礎	9
II. 北韓法의 機能	14
III. 北韓法의 特徵	17
第2節 法의 體系와 法의 源泉	21
I. 法의 體系	21
II. 法의 源泉	27
第2章 各論	31
第1節 憲法	31
第2節 行政法	39
第3節 土地法	45
第4節 民法	50
第5節 家族法	58
第6節 刑法	66
第7節 民事訴訟法	83
第8節 刑事訴訟法	88
第9節 國際法	91



〈머 리 말〉

이 論文은 北韓法을 概說하고 體系化하고자 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그동안 韓國에서도 北韓法에 관한 研究物이 적지않게 나와 있어 호뭇한 일이나, 이런 중에서도 實定法에 관한 研究物이 적어, 흡족하다고는 할 수 없는 現實이다.

北韓實定法에 관한 研究는, 北韓當局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내어 놓는 法令 뿐만 아니라, 法令의 성질을 떠는 政令, 內閣決定, 命令, 省令, 規則 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는, 正確을 기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北韓의 實情은 裁判의 기준이 되는 모든 規範을 언제나 公開하는 것도 아니며, 또 公開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또 우리들의 北韓法研究를 더욱 어렵게 만든 契機는, 근래에 와서 北韓當局이 철저히 資料非公開原則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러한 態度가 어디서 緣由되었는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아놓든 北韓實定法에 관한 研究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된 것이다.

그러나 研究上의 이와같은 隘路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한 必要性은 요즘 한결 높아지고 있다. 「唯一思想의 강조는 必야호로 法理論 또는 法學全般에 까지 波及해서, 끝내는 法理論 不在에로의 길로」달음질 치는 것이, 바로 北韓法學界의 실정인진대, 北韓法에 관한 正確한 研究는 必야호로 곧 우리들의 사명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論文은 바로 이러한 뜻에서 엮어진 것이다. 資料의 不足 등으로, 重要實定法의 몇몇을 다루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우나, 그런대로 北韓實定法의 大部分이 檢討되어졌다고 생각한다.

第1章 總 論

第1節 北韓法의 理論的基礎와 機能 및 特徵

I. 北韓法의 理論的 基礎

1. 北韓法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北韓을 포함한 모든 共產國家의 法律制度는 思想的으로나 理論的으로나 우리들의 그것과는 동떨어진 異質的인 것인 만큼, 自由民主國家의 市民으로서 그들의 法律制度를 考察할 때에는 몇가지 注意해야 할 點이 있다.

첫째, 그들은 「法은 곧 政治」라는 眼目을 가지고 法을 파악하기 때문에 먼저 「國家와 革命」을 中心으로 한 그들의 政治理論을 理解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施行하고 있는 法律制度의 實像을 파악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그들은 그들의 弁証法的 唯物史觀에 따라 社會도 끊임없는 弁証法的 變化를 거듭하며 따라서 法도 항상 變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法은 靜的인 것이라기 보다 「動的인 것」으로, 또 保守的 性質을 지닌 規範으로서 보다는 事實 및 實踐의 文書化로 理解되고 있다는 點이다.

셋째, 우리들의 法律制度에 있어서는 그 中心概念이 個人임에 反하여,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集團主義的 全體이고, 따라서 個人

相互間이나 個人과 國家 間에 對立關係가 存在한다고 보기보다도
다 같이 「共同의 利益과 目的을 追求」한다고 보는 것이다.
끝으로 共産圈의 法律에 있어서는 모든 法이 「公法化」되어 있어
우리의 法律制度에서와 같은 公·私法의 區別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네가지는 우리가 共産圈의 法律制度를 考察함에 있어 특
히 念頭에 두어야 할 點일 뿐만 아니라 北韓法을 보기 위한 重
要한 視角이 된다고 하겠다.

2. 「맑스」主義의 國家와 法

「맑스」主義의 古典的 理論에 의하면, 政治는 곧 革命을 뜻
하며, 이 革命을 中心으로하여 그들의 國家와 法에 관한 理論이
構成된다.

그들의 主張에 의하면, 「國家와 法은 下部構造로서의 經濟的 生
産關係를 반영하는 上部構造에 不過하며, 有産階級과 無産階級간의
階級鬭爭의 産物」이라고 한다. 즉 上部構造로서의 國家와 法은 少
數의 有産階級이 多數의 無産階級을 抑壓·搾取하기 위한 道具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그들의 「國家 즉 惡」이라는 國
家觀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어떤 社會에서나 生産手段의 所有關係에 變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有産階級이 타파되고 階級鬭爭이 사라진다면 國家와 法은
더 이상 存在해야 할 理由를 잃게된다는 結論이 나오게 된다.

要件대 階級鬭爭의 產物인 國家와 法은 階級鬭爭 自体의 종식과 더불어 消滅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註(1) 多數의 無產階級이 暴力革命에 의하여 少數의 有產階級을 타도하는 순간, 國家와 法은 사라지고 「프로레타리아트」獨裁만이 남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맑스」主義의 古典的 理論에 의한다면, 「共產國家」는 論議의 여지도 없고, 더욱이나 共產法理論이란 成立될 수도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러 共產國家에서 暴力革命에 의하여 有產階級이 타도되고 따라서 階級鬭爭이 종식되었다고 선언된지 이미 오래前의 일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國家와 法은 消滅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더 強固해 질 따름이다. 結局 그들의 말 대로라면 이미 消滅되었어야 할 國家와 法이 아직까지 繼續 存在할 뿐만 아니라 더욱 強固해 진다는 것은 중대한 理論上의 모순이 아닐 수 없겠다.

바로 여기에서 부터 「레닌」과 「스타린」의 國家 및 法에 관한 主張이 커다란 意義를 지니게 된다고 하겠다.

3. 「레닌」과 「스타린」의 國家・法理論

「레닌」에 의하면 우선 國家에는 두가지 種類의 國家, 즉 階級鬭爭의 產物인 '在來의 國家'와 無產階級의 暴力革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레타리아」獨裁國家가 따로 區別된다고 한다. 註(2) 「레닌」은 특히 後者를 일컬어 「半國家」라 하고, 이것을 本質的으로 '在來의 國家'와는 區別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그의 主張에

의하면 「맑스」主義의 國家消滅論에 의거하여 消滅되는 것은 바로 「半國家」뿐이며, "在來의 國家"는 消滅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레타리아」 暴力革命에 의하여 打倒된다는 것이다. 註(3) 「半國家」는 暴力革命에 의하여 打倒된 在來의 國家의 자리에 세워지며, 세워지는 순간 부터 自體의 점진적인 消滅을 準備하는 國家라는 것이 그의 主張이다.

한편 「레닌」은 共產主義의 前期段階와 後期段階를 區別하여, 「半國家」는 이 前期段階에 屬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半國家」의 前期段階에서 共產主義社會가 完成되는 後期段階를 위한 諸般 準備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準備의 道具로서 法的 存在를 認定하였으며, 이로부터 共產主義 法理論이 展開되는 것이다.

要컨데 「레닌」의 主張에 의하면 「半國家」 및 그의 武器인 法은 세가지 機能을 지닌다고 한다. 첫째, 이미 打倒된 有產階級의 反抗을 抑壓·除去하는 鎮壓機能을 지니며, 註(4) 둘째, 새로운 共產主義的 經濟秩序의 樹立을 위한 經濟組織者로서의 機能을 가지고, 註(5) 셋째, 미래의 共產主義社會에서 하등의 法的 強制를 받지 않고서도 自律적으로 生活할 수 있는 새로운 型의 人間을 만들어 내는 人間改造의 機能을 擔當한다는 것이다. 註(6) 이러한 「레닌」의 主張이 「맑스」主義의 古典的 理論을 크게 修正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더 말 할 나위도 없지만, 특히 注目되는 것은 國家 및 法이 모든 分野에서 主導的 역할을 擔當해야 한다고 한 點이라 하겠다.

「레닌」의 이러한 「半國家」理論을 이어 받아서 「스타린」은 보다 더 強力한 國家・法理論을 提示하고 또 實踐에 옮겼었다.

그는 主張하기를 社會主義 國家는 消滅되는 그 순간까지 더욱더 強固해 지는 人類史上 가장 強力한 體制를 지니는 「새로운 類型의 國家」라고 하였다. 註(7)

「스타린」에게 있어, 國家는 우선 保護的 上部構造로서의 意味를 지니며 全世界의 資本主義의 포위하에서 國內外的 反발세력을 抑壓・除去함으로써 革命에 의하여 爭取한 새로운 經濟秩序를 保護하는 任務를 띠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國家는 비록 上部構造라고는 하더라도 經濟的 下部構造를 반영하는 것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下部構造 自体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主導的 上部構造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스타린」은 下部構造와 上部構造와의 關係에 關한 새로운 도식을 꼬집어 내고, 이 兩者間에 끊임없는 弁証法的 相互作用이 行하여지고, 이로써 共產社會는 영원한 發展을 繼續할 수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서 그는 主張하기를 國家의 主導的 役割에 힘입어 「프로레타리아」 階級意識이 고취되고 「共產主義的 人間」으로의 人間改造가 可能하게 된다고 했다. 要컨대 國家는 保護的 上部構造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經濟組織者로서의 役割과 人間改造者로서의 役割을 擔當한다는 것이 「스타린」의 主張이라 하겠다. 이러한 理論的 바탕위에서 그는 소련을 비롯한 諸 共產國家의 國家・法律制度의 典型을 提示했던 것이다.

「레닌」과 「스타린」의 이러한 理論은 흔히 北韓의 「小스타린」이라고 불리우는 金日成에게는 거의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다고 보겠다. 따라서 「레닌」·「스타린」의 理論이야말로 北韓法의 理論的 基礎가 된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勿論 北韓憲法 第四條에서 밝혔듯이 金日成集團은 소위 「朝鮮勞動黨의 主体思想」을 내세워 「맑스·레닌」主義의 「北韓的」變形을 꾀한바도 없지 않겠지만, 그 根幹에 있어서는 「레닌·스타린」의 理論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겠다. 註(8)

II. 北韓法의 機能

「레닌·스타린」主義의 바탕위에서, 北韓法은 理論적으로 세가지 機能을 担当한다고 한다. 첫째, 法은 保護的 上部構造로서 社會主義 體制를 國內外的 「反革命」勢力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한 抑壓의 道具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第一次的인 意味를 지니는 것으로서, 그들은 이러한 「反革命 勢力에 대한 抑壓」을 흔히 「프로레타리아」獨裁라고 바꾸어 부르기로 한다. 따라서 自由民主國家의 法律과는 달리 法의 一般的 効力을 前提하는 것이 아니고, 有產階級 또는 資本家라고 하는 特定 集團을 規制의 대상으로 定해 놓고, 이들에게 「獨裁」를 행하기 위하여 法을 制定하고 또 執行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장악한 政權과 이를 根拠로 하여 그들이 만들어 놓은 經濟的 下部構造를

維持・保存하려고 한다. 註(9)

둘째, 모든 生産手段이 國家의 所有로 되어 있는 社會主義 國家에서는 모든 經濟活動은 國家가 計劃・遂行하며, 法은 이러한 經濟計劃을 執行하기 위한 道具의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法이 國家의 經濟組織者로서의 役割을 뒷받침 해 주는 道具가 된다는 뜻이다.

모든 財貨의 生産, 使用, 流通을 經濟計劃에 의하여 統合, 調整, 編成하여, 이것을 法の 執行과 마찬가지로 方法으로 執行하기 때문에 이 計劃은 곧 法的 強制力을 가지는 것이다. 註(10)

이러한 國家의 經濟計劃과 法律과의 關係는 두말 할것 없이 소련의 法律制度에서 처음 施行된 것으로서, 註(11) 이것을 北韓의 金日成集團이 그대로 導入해 들어 온 것이다.

셋째로, 法도 그리고 그것을 執行하는 國家도 없는 미래의 共產社會의 到來에 대비하여, 法은 共產社會의 生活에 적합한 새로운 人間을 만들어 내는 임무를 띠고 있다고 한다. 財産의 社會的 共有, 權利에 앞서는 義務, 個人에 우선하는 全体, 支配者의 指示에 대한 맹목적인 服從 등을 內容으로 한 새로운 法律을 定立해 놓고, 이것을 暴力에 의하여 強制하고, 黨과 行政權力에 의하여 조종되는 「批判과 自我批判」에 의하여 注入함으로써 새로운 道德的 規範意識을 造成해 낸다는 것이 그들의 法律觀이라 하겠다.

이 점을 특히 強調하여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집단주

의에 기초한 우리사회의 본성에 맞게 살며 행동하도록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사회주의적 공동생활 질서를 정연하게 세우며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문화, 도덕 생활의 규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도덕 규범들을 없애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운동으로 새로운 도덕생활의 본보기들 하나 하나 만들어 일반화하며 점차 공산주의적 도덕규범들을 완성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註(12)

憲法을 비롯한 각종 法律에 의하여 政治, 經濟, 社会生活의 본보기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끊임없이 暴力과 法的 強制에 의하여 반복 교육시킨다는 것이 北韓法의 重要한 役割로 되어있다. 바로 이 點에 착안하여 「버만教授는 社会主義 法을 「스승 및 父母로서의 法」이라고 했었다. 註(13)

結局, 權利와 義務의 主体이던 人間은 社会主義 法에서는 그 主体로서의 地位에서 물러나서 指導와 訓育의 客体로 轉落하게 된 것이다. 要컨대 法規範的 計劃에 의하여 經濟的 生産關係를 뒤바꾸어 놓고 法的 強制에 의하여 人間의 意識과 良心을 改造하는 것을 놓고서 그들은 社会主義 法의 「創造的」機能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Ⅲ. 北韓法의 特徵

「맑스」主義에 있어서, 弁証法的 發展의 論理는 그들의 法理論上 重大한 意義를 지닌다. 즉 社會는 必然의 法則에 따라 弁証法的 發展을 거듭하여 向上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時点에서 法을 定立하여, 이것을 미래에 繼續하여 適用한다는 것은 이러한 社會發展理論에 어긋나며, 이러한 法은 곧 在來의 「부르조이國家의 法이 지니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特性이라고 한다. 이러한 뜻에서 그들은 法에도 發展의 論理를 適用하여 法의 規範的 持續性 또는 保守性같은 것을 否認하고, 오히려 法은 發展하는 社會의 現實과 實踐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共產主義 法理論에 의하면 法은 이미 社會의 具體的 現實로 나타난바를 文書化하거나, 社會의 實際的인 實踐에 의하여 達成한 바를 記錄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 法에 앞서 社會의 現實과 實踐이 있고, 法은 이 뒤를 쫓을 뿐이고, 이러한 現實과 實踐에 배치되는 法은 存在할 수도 없고 또 効力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自由民主國家의 法治主義와는 正面으로 對立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 그들이 法을 強調하는 오늘 날의 現實에 비추어 볼때, 結局 한 個人의 獨裁를 社會의 現實 또는 實踐이라고 하고, 여기에 法이 뒤쫓아 가야 한다는 論調를 낳게 된다고 하겠다. 要컨대 이러한 理論이 北韓에서는 金日成 個人의 獨裁를 正

当化하여 주는 道具로 利用된다고 하겠다. 여하튼 法이 未来指向的인 法規範으로서 보더라도, 現實과 實踐 그리고 達成된 成果의 記錄 또는 文書化로만 認定된다는 것은 北韓法의 重要한 特徵이 된다고 하겠다. 註(14)

北韓法의 또 하나의 特徵으로 認定되는 것은 그들의 法이 權利보다도 義務 中心으로 되어 있다는 点이다. 自由民主國家의 法理論에 의하면 權利는 對立概念이고 또 橫的 概念이다. 즉 自由主義的 個人主義的 法律觀에 立脚하여 國家權力에 對항하는 基本的 公權이 있고 市民 相互間의 橫的 對立關係에서 여러가지 私法上의 權利가 主張되는 것이다. 그러나 全體主義 및 集團主義의 思想的 基礎위에 서있는 北韓의 法律制度에서는 個體에 우선하는 全體, 個人에 우선하는 國家의 觀念이 支配하고 있는 만큼, 個人, 國家, 社會는 다같이 하나의 有機體的 一體를 이루고 있고, 다같이 同一한 利益을 위하여 同一한 方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註(15) 따라서 國家와 私個人間에 그리고 私個人 相互間에는 有機體的 機能關係만 있을 뿐, 對立關係란 있을 수 없으며, 그런 뜻에서 對立概念으로서의 權利概念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北韓의 權利概念에 관하여 두가지 點을 지적해 낼 수 있다. 첫째, 비록 北韓法에서 어떠한 權利를 規定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곧 全體의 目的과 利益에 이바지 한다는 뜻에서 同一한 內容의 義務로 轉換된다는 點이고, 註(16) 둘째, 北韓法에서 의 權利는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機能概念으로 이해된다는 點이

다. 註(17) 窮極의으로 全体 즉 國家만이 實質的 意味의 權利를 지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有機體의 一部分으로서의 個人은 이러한 國家의 權利에 相應하는 義務만을 부담한다는 것은 당연한 結論이라 하겠다. 그리고 個人은 全体속의 한 部分으로서 有機的인 역할만을 다하는 것으로 그의 存在意義를 지니는 만큼, 그들이 個人의 權利를 내세웠을 때에는 그것은 항상 機能的인 역할만을 뜻하는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 要컨대 北韓法은 權利보다는 義務 中心으로 되어 있으며, 설혹 그들의 法가운데에 具體的인 權利를 明示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것과는 달리 機能的 概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強調해야겠다. 註(18)

다음으로 北韓에서 모든 法은 事實上 公合法化되어 있다는 점을 또 하나의 特徵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法律制度에서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바와 같은 公法과 私法의 區別을 北韓法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모든 法이 公法으로서의 意味와 効力만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憲法과 刑法이 公法의 테두리 안에 들어 간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지만, 우리가 一般的으로 私法으로 取扱하는 民法마저도 公法的인 것으로 解釈·適用되고 있다. 私個人의 所有權이 認定되지 않는 만큼 私法上의 所有權 移轉이 있을 수 없고, 그들이 말하는 契約이라는 것도 사실상 對立된 當事者·間의 意思表示에 의한 法律行爲의 概念이라기 보다는, 國家의 經濟計劃을 實施하기 위한 聯結고리에 불과하다. 註(19)

그리고 北韓에서는 勞動에 의하지 않은 모든 所得을 中間利潤에 의한 不當所得으로 보는 만큼 여하한 商行為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私法으로서의 商法도 있을 수 없다. 私法的 면모가 가장 強하게 나타나 있을 家族法마저도 대체로 國家關與의 幅을 넓은 社會保障法的 性格을 띠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私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民事法系의 法律마저 北韓에서는 公法化되었다고 할 때, 적어도 法的 意味에 있어 그것은 私個人 相互 間的 私的 去來關係를 否認하고 오로지 國家權力 主導下의 行政法的 關係만을 認定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

끝으로 北韓의 法律制度에 있어 法の 制定 및 運用이 黨의 政策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特徵으로 指摘될 수 있다. 즉 다른 社會主義國家에서와 마찬가지로 北韓의 경우에 있어서도 勞動黨의 政策과 理念이 法の 意味內容과 解釋·適用을 左右한다는 뜻이다. 「레닌」이 처음 黨과 國家機構의 二元構造를 主張하여 實踐한 以來, 모든 共產國家에서 그러한 二元體制를 採択하고 있다. 北韓도 例外는 아니다. 註(20) 내세워진 理念에 따라 政策을 立案·提示하고 이의 施行을 감독하는 黨과, 이렇게 提示된 政策을 實踐에 옮기는 行政機構로 二元化되어 있어, 어느 하나든지 떼어놓고 論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法도 黨 政策에 따르는 以外에 自体의 客觀的인 妥當性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다. 이 점과 關聯하여 金日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

기입니다. 우리 국가의 정책은 우리 당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우리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한 모든 정책을
내세웁니까? 그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우리 당입니다.' 註(21)
要컨대 法の 形式을 빌어 當의 政策이 表出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第 2 節 法の 体系와 法の 源泉

I. 法の 体系

종래 우리가 法の 体系를 따질 때는 흔히 大陸法系와 英法法系의 두가지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社會主義陣營의 膨脹과 이에 따른 社會主義諸社會에 대한 法の 적용이 점차 現實的인 問題로 일어남에 따라, 그 特殊社會에 적용되는 一連의 法の 体系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世界의 法体系는 社會主義法系를 하나의 그룹으로 하고 自由民主主義諸法^{註(22)}을 그 또 다른 하나로 하는 区分方法이 오히려 現實的인 것으로 抬頭되어 있다. 이렇게 法을 나누고 볼 때, 北韓法은 明白히 社會主義法系에 해당한다.

그러나 北韓法을 社會主義法系에 당연히 包含시키고자 할 때는, 다시 다른 問題가 발생된다. 우리가 社會主義法의 原形을 찾고자 할 때는 으레껏 소련法을 들게 된다. 즉 적어도 이런 각도에서 보아 社會主義法은 소련法 내지는 소련式의 法을 말하게 된다.

그런데 소련社会和 北韓社会는 많은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도 적지 않다. 党的 지도, 社会主义的 計劃經濟, 親權者的인 法의 性格 그리고 理論的인 기초로서 마르크·레닌主義를 強調하는 점註(23)에서 보아, 소련法과 北韓法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소련社会 내지는 소련法이 西歐式인 倫理的 宗教的 要素를 담고 있고, 그 반면 北韓法이 韓國의 傳統的인 習俗과 倫理를 담고 있는 점에서, 두 社会의 法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더구나 이 두 법사이의 차이는, 두 社会의 政治的인 理念이 점차 극단으로 逆行하고 있는 此際에서는 더욱 벌어지는 감이 짙다.

이런 점에서 「데이비드」教授의 法의 4分法註(24)이 妥当性を 갖는다면, 確實히 北韓法은 中共法과 아울러, 一般的인 意味에서의 社会主义法이라고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北韓의 最高指導原理가 일직부터 法의 政治經濟에의 從屬性註(25) 理論을 堅持해 온 위에, 최근에 들어 法의 獨自性 특히 소련法과의 絶別을 선언하는 따위는, 社会主义法系에 대한 위의 檢討를 더욱 실감나게 일깨워 주는 一連의 조치들이다.

그러나 社会主义諸國法 사이에서의 法系統分類를 위한 이같은 努力에도 불구하고, 또 社会主义諸國 사이의 具體的인 理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生産手段의 私所有를 原則적으로 認定하는 資本主義法系와 비교할 때, 北韓法은 여전히 社会主义法系의 범주를 넘어 설 수 없는 것이다.

β. 北韓法의 体系를 檢討할 때 두번째로 問題되는 점은 法部門의

区分에 관한 일이다. 소련에서는 法部門을 具體적으로 어떻게 나누는가에 관해서 소련 法學界에서는 일직부터 여러차례에 걸친 활발한 論爭이 展開된 바 있다. 이들 論爭은 觀念的이거나 講學上的 다름에 관한 것이 아니고, 法典化라든가 또는 重要的 法의 立法 따위와 같은 作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다. 註(26)

이에 비하여 北韓의 事情은 소련과는 여러모로 달라 여기에 관한 論爭은 그리 크게 일어난 바 없는 듯하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各 法部門을 「커버」하는 統一法典이 制定된 수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北韓에서도 그동안 憲法, 刑法, 刑事訴訟法典 따위의 統一法典의 制定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들 밖의 法部門에 관한 그것은 아직 具備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法典이 체 정비되지 못한 실정 아래서 이들 問題를 다룬다는 것은 時期尚早이기 때문이다.

둘째, 法에 대한 價値觀이 아직 指定되어 있지 못한 現實때문이다.

北韓에서는 法을 定立해 주는 經濟的 條件은 너무나도 流動的이다. 거기에는 近年부터 일어난 소련으로부터의 離脫現象은, 指定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바탕을 더욱 흔들여 놓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마당에서 法을 体系的으로 분류한다는 일은 實益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法體系가 完備되지 못하였다고 해서 北韓에서는 憲法, 民法, 또는 刑法 따위의 法部門마저 전적으로 모호 혼돈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體系가 完備되어 있는 쪽에서 보아 그들의

法體系가 不完全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現在의 北韓法은, 傳統的인 西歐法體系에 따라 分類될 수는 없다. 그래서 公法과 私法을 嚴然하게 区分하고자 하는 일이라든가, 公私法의 中間形式으로서의 社會法의 概念 抽出 따위와 같은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불때 順연한 私法에 속하는 民法이, 그 속에 社會主義의 所有形態의 基本을 定하는 規定을 두고 있다거나, 國家計劃經濟의 實現을 위한 契約規定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은, 民法으로 하여금 憲法 내지는 行政統制法의 性格을 띠게한다. 또 體系上 私法인 財産法의 一部를 이루는 土地法이, 國家總計劃에 따라 全國을 統理하는 國土開發管理法의 內容을 지니는 것 등은, 그러한 北韓의 事정을 잘 說明해 준다. 따라서 北韓法을 分類하고자 할 때는, 그法이 지니는 性格의 分析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해당 法이 어떤 性質의 것으로 보다 많이 기울어져 있는가와 그들이 法律講學上 어떻게 分類하여 講議하는가를 찾아내는 일도 못지 않게 중요한 일에 속한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해 불때 北韓法의 큰 줄거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憲法分野 : 國家機構의 組織法인 各種人民會議의 組織法 따위도 包含한다.

② 行政法 : 行政法이라고 이름붙인 獨立된 法典도 없고, 또 모든法이 行政法的 特性을 多少는 띠고 있으므로 이 部門을

추려내는 作業은 가장 어렵다. 그러나 公務員의 人事行政 및 財務行政關係를 規制하는 法들의 集合을 行政法部門에 包含시키고 있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③土地法 : 하나의 獨立된 法の 영역으로서, 國土의 綜合 計劃, 利用 및 管理등이 주된 規律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私法的인 性格 보다는 憲法에 가까운 基本法의 性質을 갖는다.

④農業協同組合法 : 農業協同組合의 組織과 運營, 組合에 대한 國家的指導, 組合과 組合員 및 農戶 사이의 關係를 規制한다. 農業協同化運動이 차지하는 위치가 國家的인 것인 만큼, 이 法部門의 獨立性 역시 당연히 強調되어 왔다.

⑤勞動法 : 勞動者의 勤勞條件의 改善 따위와 같은 勞動法 本然의 領域外에도, 勞動法은 統制經濟에서 所要되는 勞力を 合理的으로 배치하는 일과 技術 및 技能을 높이는 일 까지 規制한다. 따라서 勞動法은, 1946年 6月 24日 제정의 勞動法令 뿐만 아니라, 위의 目的에 아바지하는 여러 法들은 包含하게 된다. 또 이러한 뜻에서 勞動法은 그 獨自의 領域을 지니게 된다.

⑥民法部門 : 相統法을 包含하며, 婚姻家族法은 除外한다. 運送契約 및 保險契約 뿐만 아니라, 商事에 속하는 法律關係가 民法에 規制된다. 이러한 點에서 民法은 商法도 될 수 있고 經濟法의 구실도 할 수 있는 넓은 部門을 차지한

⑦家族法：婚姻，親子 및 그 밖의 家族 사이의 身分上 또는 財産上의 여러關係를 規律한다. 共產革命의 二大指標중의 하나인 男女平等의 具現은 이 法을 通해서 이루어 진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家族法은 民法에 包含될 수 없는 独自の 法部門이 되고 있다.

⑧刑法：憲法과 더불어 成文綜合法典의 形式을 갖추어져 있다.

⑨訴訟法：刑事訴訟法과 民事訴訟法으로 大別된다. 前者는 刑法의 法典化와 더불어 함께 法典化가 되어 있으나, 後者는 民法典이 採択되지 못한 關係上 지금껏 法典化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⑩國際法：閉鎖政策으로 因하여 外國과 맺은 條約等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社會主義法의 一般理論에 따라, 獨立된 研究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위에서 보아 온 것과 같이 北韓法은 대체로 10개의 法部門으로 大別될 수 있다.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이들 法은 北韓社會의 特性에서 나오고 또 그 특성때문에 그 區別方法은 民主諸國法과 다르게 된다. 따라서 우리 法의 分類方式으로써 北韓法을 分類하고자 하는 것은 決코 正確을 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 研究에서 시도된 法의 分類는 우리들의 이해를 위한 편의상의 分類임을 밝혀둔다.

II. 法の 源泉

北韓의 法이 어디에 存在하고 있는가에 關한 問題이다.

北韓은 지금껏 体系的으로 정비된 法典이 完備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 裁判規範인지 모호한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法典이 없다는 것이 北韓에서 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아니한 일이다.

一般的으로도, 實定法이란, 制定法과 不文法으로 나누어 진다. 따라서 北韓의 法에는 成文法과 不文法의 兩者가 存在한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北韓法의 法源은, 그때 그때 必要에 따라 制定한 法典 또는 單行의 成文規範들이 여기에 속한다.

成文法의 形式은 法律의 形式을 빌어 制定되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政令, 內閣決定, 命令, 省令, 規則 등 여러가지로 表現되고 있다.

成文法은 위에 내어 건 것에만 한정될 수 없다. 보통 黨이 내어 놓는 指針, 方針, 原則등은 勿論, 勸誘事項에 이르기 까지 그것들은 實質的으로 成文法에 해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法이라는 것은 黨策을 實現하기 위한 道具이며, 모든 黨策은 바로 法과 連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註(27)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보아 成文法은 비록 体系的으로 制定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지않은 量이 存在하고 있다 하겠다.

不文法の 法源性 인정에 關하여는 여러가지 問題가 있다. 보통 不文法으로는 慣習法, 判例法 그리고 條理를 들게된다.

西歐諸國에 있어서는 慣習法을 法源으로 인정하는 데는 異見이 없다. 그러나 北韓法의 態度는 전혀 이와 相反되어 慣習法의 法源性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北韓은 既存의 社會秩序는 모두 革命의 利益에 相反된 것이며, 社會主義 革命은 이러한 秩序를 打破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종래의 沿革 또는 慣行은 法的確信과 連結될 수 없는 것이다.

判例法의 法源性 認定에 關해서도 問題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關한 問題로서, 最高裁判所 全員會議의 指導的 指示의 性質에 關한 問題가 있다. 指導的 指示는, 國民들의 現實生活 내지는 裁判實務에 있어서 法律問題解決의 중요한 指針이 되고 있음은 뚜렷한 일이나, 北韓의 一般的見解는, 裁判所의 高유의 任務가 法을 적용하는 데 있고 法을 제정하는 機能기 없다는 理由註(28)로, 이를 法源으로 認定하지 아니한다. 指導的 指示의 法源性問題는, 종래 社會主義法理論에서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소련法學者 사이에는 오랜 論爭의 대상이 되어 왔다. 소련의 形便에 의하면 一連의 指導的 指示는, 既存法令의 해석 이상의 것을 內包하게 된다는 것이라든가, 또 특히 소련民法上의 많은 제도가 最高裁判所의 指導的 指示에 의하여 생겨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多數說은 그 法源性을 認定하고 있다. 소련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立場이 오히려 그 反對가 되고 있는 것은, 곧 소련과 같지 못한

다음 같은 실정 때문이다. 첫째,北韓은 소련에 비하여 法の政
 治에로의 隸屬性이 보다 짙을 뿐 아니라, 法은 다만 党策實現
 의 수단으로 純사리 明滅될 수 있는 物이므로, 裁判所가
 既存法을 擴大解釋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둘째, 北韓은 소련과는 달리 法の 歷史 變지는 裁判所의 歷史가
 아주 짧아 그 指導的 指示의 수도 極히 한정되어, 이것이 國民에
 의하여 法的 確信을 얻기에는 매우 어려운 地位에 있기 때문이다.
 不文法으로서의 系理를 北韓에서는, 法意識, 民主的 意識 또는 民主
 的 法意識 따위와 같이 여러가지로 表現하고 있으며, 이 法意識을
 法源으로 인정하고 있다.

法意識을 法源의 하나로 認定하는 것은, 大部分의 社會主義諸國이,
 法の 流動性의 原則을 尊重하는 데서 오는 당연한 論理의 귀결이
 다. 따라서 소련과 같이, 法の 重要한 形式이 成文化되어 있는
 國에서는 法の 穩定性이 強調되어 法意識이 法源으로 作用될 여지
 는 거의 없으나, 革命의 過程에서 法律의 空白이 많은 北韓과 같
 은 社會에서는, 法源으로서의 注意識이 차지하는 範圍가 大端히 넓
 다.

1946年3月6日 字 「北朝鮮臨時委員會 司法局, 裁判所, 檢察所의
 構成과 職務에 관한 基本原則」 第20條에 의하면, 裁判할 때 判事
 는 「民主主義的 意識과 朝鮮人民의 利益에 立脚하여 裁判하여야 한
 다」고 하여, 民主主義的 法意識이 法源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法도기에서의 넓은 法的 空白을 이것으로써 「커버」하고자 하고있다.

이렇게 볼 때, 法意識이라는 것은, 法的諸問題에 關係되는 一定한 社会的 政治的 理念, 原則 또는 要求의 總體를 의미하게 되며, 또 具體的인 問題에 黨의 政策을 반영할 수 있게 되는 能小能大한 流動的인 存在로도 되어, 결국은 언제나 共產主義過度政權의 커다란 武器로 되고 있다.

第 2 章 各 論

第 1 節 憲 法

I. 北韓憲法の 特殊性

北韓은 1972年 旧憲法을 全面的으로 廢棄하고 「社會主義 憲法」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憲法을 採択·施行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새로운 憲法의 採択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이 글음에 대한 解答이야 말로 北韓憲法의 理解를 위한 重要한 실마리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라고 보겠다.

本來 「맑스」主義의 主張에 의하면, 無産階級의 暴力革命은 工業化가 最絶頂에 달할 先進 産業社會에서만 可能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共産黨 政權이 들어 선 것은 例外없이 모두가 經濟的 後進國家에서였다. 따라서 이들 共産政權들은 한결같이 完全한 共産社會에 이르기까지의 社會·經濟的 諸 段階를 國家權力에 의하여 밟아나가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下部構造의 變動에 따라 政權을 잡은 것이 아니었던 만큼, 오히려 「맑스」主義의 公式을 逆順으로 適用하여, 먼저 上部構造인 政權을 장악한 다음 이것을 拠点으로 하여 下部構造를 共産社會의 實現에 알맞는 狀態로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結局 이미 장악한 國家權力에 힘입어 人民民主主義의 段階와 社會主義의 段階를 거쳐 完全한 共産主義의 段階에 이르게 된다는 進度表가 作成되게 된 것이다.

○ 共產國家의 憲法은 바로 이러한 諸 段階를 거치는 過程에서, 그때 그때 達成한 바를 文書化해 놓은 것에 不過하다. 自由民主國家의 憲法을 政治現實을 規制對象으로 하는 法規範이라고 함에 反하여, 共產國家의 憲法을 단순히 「事實의 記錄」 또는 「征服된 領土」에 不過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註(29) 즉 共產國家의 憲法은 政治現實을 規制하기 위한 法規範的 設計이기보다 이미 達成한것, 그리고 이미 存在하는 것은 宣言해 놓은 記錄書에 不過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一定한 段階가 지나면 憲法도 바뀔 수 밖에 없다는 것은 當然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 이러한 共產黨의 憲法觀에서 北韓도 例外일 수는 없다. 따라서 1972年에 制定된 北韓의 現行 憲法은 北韓이 이제 人民民主主義의 段階註(30)를 넘어 서서 社會主義의 段階에 이르렀음을 文書化해 놓은 것이다 하겠다.

이러한 意味를 담고 있는 北韓의 現行 社會主義 憲法에서 대체로 세가지 줄거리를 끌라 낼 수 있겠다.

첫째, 人民民主主義를 淸산함으로써 소위 「人民聯合獨裁」대신에 勞動黨을 선봉으로 한 「프로레타리아」單一獨裁를 내세우게 되었고, 그것은 곧 이제 「全 人民의 聯合戰線」을 더 이상 繼續할 必要없이, 勞動黨의 一黨獨裁만으로도 自体 政權의 安定을 기할 수 있다는 自信을 과시한 것이다 하겠다. 둘째, 社會主義的 經濟秩序를 固着시킴으로써 國家所有 爲主의 社會主義的 所有制度를 確立하게 되었다. 따라서 國家만이 經濟活動의 主体로 認定되고, 國家의 豫

算編成과 經濟計劃 自体가 經濟活動의 全体的 內容을 이루게 되었다. 셋째, 새로운 權力構造를 採択함으로써 金日成의 一人獨裁體制를 憲法上으로 制度化했다는 點을 指摘할 수 있겠다.

II: 北韓의 統治機構

北韓의 現行 憲法은 旧 憲法에 比하여 統治機構面에서 가장 두드러진 差異點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旧 憲法에서는 意味上으로만 內包되었던 「民主的 中央集權制」(democratic centralism)가 明文으로 規定되었다는 點이다. 註(31) (北韓 憲法 9條). 勿論 北韓의 「勞動黨 規約」(20.10.12. 21.11.14. 21.11.14.) 第 4 章 21 條 및 29 條에서 民主的 中央集權制를 規定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憲法上의 明文規定으로 나타난 것은 現行 憲法이 처음이다.

一般的으로 共產國家에서는 民主的 中央集權制를 主로 中央의 決定과 大衆의 參與·同調로 理解하고 있다. 따라서 決定權은 大衆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中央에 있으며 大衆은 積極 參與하여 同調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制度를 처음부터 規定해 놓았다는 것은 北韓憲法이 根本적으로 中央 즉 金日成 個人的 獨裁體制를 內実로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北韓憲法上의 統治機構를 考察할 때에는 항상 이러한 意味內容을 지닌 民主的 中央集權制를 바탕에 깔고서 보야 할 것이다. 즉 그들의 統治機構에 있어 「民主的은」은 民衆의 參與와 同調를 意識한 宣傳的 修飾語이

이고, 權力構造의 實質은 「中央集權」에 있음을 항상 念頭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그들의 國家主席制度라 하겠다. 最高人民會議에서 選出되는(北韓憲法 76條3號) 主席은 國家의 首班으로서 國家의 主權을 代表한다(同89條)고 함으로써, 그들의 舊憲法에서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가 소위 「會議制 大統領」으로서 차지하던 國家元首로서의 地位를 넘겨 받게 된 것이다. 勿論 이것은 儀禮的인 것에 不過하지만, 그에 결들여 여러가지 實質的인 權限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 注目되어야 할 것이다. 즉 最高政策決定機構인 中央人民委員會를 直接 指導하는 權限(同91條), 執行機構로서의 內閣에 해당하는 政務院을 指導하는 權限(同92條), 軍統帥權 및 國防委員會委員長으로서의 權限(同93條), 法令·政令公布權 및 命令發布權(同94條), 特赦權(同95條), 條約의 批准·廢棄權(同96條), 外交使節信任接受權(同97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權限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最高政策決定機構인 中央人民委員會에 關係된 權限, 軍統帥權 그리고 政務院 指導權이라 하겠다. 中央人民委員會는 과거의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가 가지고 있던 立法權뿐만 아니라 內閣이 가지고 있던 政策決定權까지 흡수한 強力한 機構인 만큼, 이것을 장악하는 主席의 權限이 強大해 진다는 것은 當然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의 戰爭準備로 極도로 비대해진 軍을 統帥하는 權限이 特別한

比重을 차지함은 勿論이고 심지어 단순한 執行機構로 格下된 政務院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點에서 主席의 權限은 實質的으로 立法權, 行政權, 司法權 全般에 까지 미친다고 하겠다.

北韓憲法上的의 機構가운데서 中央人民委員會는 가장 두드러지게 集權化現狀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金日成의 絶對的 專制權을 制度的으로 保障하여 주는 機構라고 하겠다. 과거의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가 가지고 있던 大部分의 實權을 넘겨받아 立法權을 거의 장악하고, 對内外政策을 決定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짐으로써 (北韓憲法 103 條 1 號) 實質的인 行政權을 行使하며, 司法 및 檢察을 指導으로써 (同 103 條 3 號) 司法權 行使에 대하여 決定的인 統制權을 가진다는 點때문에 中央人民委員會는 事實上 三權이 統合된 最高의 統治 機構라고 할 수 있겠다. 勿論 法令制定權을 가진 最高人民會議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1 年에 一·二次정도 밖에 集會하지 않고 議案 提出權이 國家主席, 中央人民委員會,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및 政務院등에 있는 點으로 미루어 보건대, 最高人民會議가 實質的인 立法權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역시 과거의 常任委員會와 같은 法令制定權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機能은 다분히 最高人民會議 休會中の 連絡事務에 그칠 可能性이 짙다고 하겠다. 따라서 北韓憲法에서는 中央人民委員會의 政令制定權이야말로 가장 實質的인 立法權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크다고 보겠다.

그리고 中央人民委員會는 對内外政策決定뿐만 아니라 政務院構成을

調整하고 (同 103 條 6 號), 政務院 構成員을 任免할 수 있고 (同 條 7 號), 기타 行政的 權限을 가짐으로써 政務院의 行政作用을 左右할 수 있는 位置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司法府 즉 中央裁判所의 判事가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에서 選出된다고 하더라도 實際 司法作用에 있어서는 中央人民委員會의 指導를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司法權 역시 中央人民委員會에 예속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9 이처럼 三權이 統合되어 있는 強大한 機構가 國家主席의 指導下에 놓여 있다고 할 때, 北韓의 權力이 얼마나 철저히 一人에게 集中되어 있으며, 그것이 또 얼마나 確固하게 制度上的 保障을 받고 있는가를 비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의 現行 憲法은 舊憲法下的 內閣을 政務院이라고 改名하고 그것을 國家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의 統制下에 두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內閣首相에 해당하는 것으로 總理를 두고 部門別 執行機構로 各 部를 두고 있다. 이 政務院은 순전히 行政的 執行機關에 不過하며, 그 以上の 政策決定에 關係된 權限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地方行政委員會를 指導하고 (同 憲法 109 條 1 號), 經濟計劃作成 (同 條 3 號), 豫算의 編成 (同 條 4 號), 諸行政事務를 執行하고 (同 條 5 號), 貨幣, 銀行制度에 관한 對策 (同 條 6 號) 등과 같은 實務的인 權限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政策決定權을 상실한 政務院은 相對的으로 格下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Ⅲ. 北韓憲法上的 經濟條項

北韓의 舊憲法에서 보면 生産手段의 所有에 있어 네가지 類型을 지적할 수 있었다. 첫째, 國家의 所有, 둘째, 協同團體의 所有, 셋째, 個人自然人的 所有, 넷째, 個人法人의 所有가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私個人과 法人에 대하여서 마저 生産手段의 所有를 認定한 것은 우선 급격하게 私的 所有를 全面的으로 否認하는 경우에 야기될런지도 모르는 經濟的 退步를 미연에 防止하자는데 目的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人間의 個人的 財產所有慾에 힘입어 個人의 經濟的 創意力を 活用해 보자는 것이었고 끝으로 점진적인 方式으로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를 축소하고 그것을 國家所有 또는 協同團體의 所有로 轉換시키려는 의도에서 였다. 勿論 地下資源, 主要企業 등은 國家所有였으며, 窮極적으로 國家所有 以外の 기타 所有를 廢止하여 國家所有로 一元화한다는 의도만은 뚜렷했었다.

現行 憲法에서는 生産手段을 國家와 協同團體만이 所有한다고 規定함으로써 (同憲法 18條), 北韓에서는 個人自然人이나 個人法人의 私的 所有가 完全히 廢止되었음을 確認하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北韓社會에서는 國家所有가 主導的 역할을 担当하며, 또 國家所有의 對象에는 制限이 없다 (同憲法 19條)고 밝힘으로써, 協同團體의 所有마저도 점차 國家所有로 轉換시킬 것을 期約하고 있다 (同憲法 21條). 이에 결들여서 個人所有는 個人的 消費를 所有에만

局限하고, 그것도 個人의 勞動에 의하여 얻어진 것과 國家에 의하여 追加的으로 分配된 것에만 限한다고 規定하고 있다(同憲法 22 條) 따라서 個人의 剩餘所得은 비록 그것이 消費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체 容認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所有制度를 기초로하여 國家는 全面的인 計劃經濟를 實施하며, 社會의 모든 經濟活動은 國家의 豫算編成과 經濟計劃에 의하여 中央集權的으로 調整統制되는 것이다. 註(32) 國家의 모든 生産은 國家의 所有가 되고 이것을 勞動을 代價로 個人에게 分配하는 만큼 個人所有가 認定될 때에만 認定될 수 있는 租稅制度가 存在할 理由가 없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할 귀결일 것이다. 註(33)

이와같은 團體主義的 經濟秩序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하나의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 原則」(同憲法 49 條)을 強調하고, 더 나아가서 個人의 所有慾을 除去하는 人間改造에 努力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公民은 國家財産과 共同財産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貪汚, 浪費現象을 반대하여 鬪爭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主人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는 規定은 굳이 設定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國家가 經濟秩序에 있어서 唯一한 主導役을 担当하는 까닭에, 北韓을 包含한 모든 共產國家의 政府作用은 大部分 經濟計劃을 樹立, 執行, 統制하는 經濟組織者로서의 作用에 치우치고, 行政機構의 構成에 있어서도 比較的 細分化된 經濟關係 部署들이 大多數

를 차지하고 있다. 註(34)

여하튼 北韓憲法은 人民民主主義의 旧憲法에서보다 한層 철저한 國家所有制度를 規定하고 있으며, 個人的 私的 所有는 限定된 경우를 除外하고는 全面的으로 否認하고 있다. 따라서 個人的 營利追求慾에 바탕을 둔 私經濟가 存在할 여지가 없을뿐만 아니라 오직 行政權에 의하여 主導되는 國家的 單一經濟만이 있을 뿐이라 하겠다.

IV. 北韓憲法上の 基本權

北韓憲法에서의 基本權을 考察할 때에는 특히 두가지 點에 留意하여야 한다.

첫째, 그들은 完全한 共產社會의 到來를 確信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共產社會에서의 生活에 알맞는 人間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人間改造에 크게 力點을 두고 있으며, 基本權도 이에 맞추어 열거되어 있다. 둘째, 그들은 集團主義의 原則에 立脚하여 基本權을 理解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權利를 對立概念으로서 보다도 機能概念 또는 實現可能性概念으로 把握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點을 念頭에 두고 그들의 基本權을 考察할 때, 그것은 우리들의 基本權觀念과는 全然 다른 것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北韓憲法第三章은 文化에 관한 章을 두어, 새로운 生活樣式, 社會

主義的 文化 및 科學, 社會主義的 教育制度 등을 規定하고, 이의 指導理念으로 社會主義·共產主義 建設者의 養成(同憲法 36 條) 과 「知·德·體를 갖춘 共產主義的 새 人間」(同憲法 39 條) 의 造成을 내세우고 있다. 註(35) 이러한 指導理念에 맞추어서 우리의 社會的 基本權에 해당하는 事項들, 例컨대 教育, 文化, 勤勞, 醫療 등을 育成·保護·獎勵한다고 宣言해 놓고 있다. 그들의 權利觀念이 우리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權利」로서 主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國家가 一方的으로 育成·保護·獎勵한다고 約束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權利觀念은 第四章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에 결하여 第49條에서는 集團主義原則을 내세움으로써 對立된 當事者 間에 主張할 수 있는 對立的 權利概念보다도 國家에 의하여 實質적으로 保障받을 수 있다는 可能性概念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즉 國家가 實質적으로 保障하겠다고 約束한 것만이 權利일 수 있고, 個人이 國家에 대하여 請求·主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註(36) 이러한 觀念을 바탕으로 하여, 平等權, 參政權,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權利와 함께 其他 여러가지 權利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註(37) 이들 「權利」가 國家에 對항하여 主張할 수 있는 權利가 아닌 만큼, 「權利」의 侵害가 행하여 지는 경우, 이를 救濟받을 수 있는 具體적인 法的節次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國家權力에 의한 實質的 및 物質的 保障만을 約束하고 있을 뿐이

다. 註(38) 이 점에서 볼 때 그들의 「權利」는 단순한 利益概念에 가까운 것으로서, 이 「權利」에는 反射的 利益까지도 包含될 수 밖에 없다. 註(39)

한편 北韓憲法상의 基本權을 볼 때는 항상 그것이 곧 같은 內容의 義務로 바뀐다는 것을 注目해야 할 것이다. 自由民主國家의 基本權과는 달리, 北韓의 基本權과 義務는 國家權力作用과 平行하는 權利 및 義務이다. 다시 말하면 社會主義國家에서는 個人, 國家, 社會가 相互間에 對立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만큼, 「이 三者는 歷史法則에 따라 같은 方向으로 가고 있으며, 따라서 國家에 對항하는 個人的 防衛手段으로서의 人權은 存在할 여지가 없다.」 註(40) 이로부터 權利는 곧 義務라는 論理가 成立되는 것이다. 여하튼 北韓憲法の 第67條는 「公民은 國家의 法과 社會主義的 生活規範, 社會主義的 行動準則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規定한 것을 필두로 모든 「權利」가 義務로 바뀌어 질 뿐만 아니라, 그 以外에도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의 財産은 神聖不可侵이다」(同憲法 70條)라고 規定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經濟的 「權利」를 義務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길을 더 놓고 있다. 즉 그들의 物質的 權利는 國家에서 定해 준것 以外의 것을 所有하지 않을 義務를 뜻하는 것이다. 註(41)

第 2 節 行 政 法

I. 北韓行政法の 特殊性

모든 法이 公法化되어 있는 北韓에서 유독 行政法体系만을 따로 分類해 낸다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一般的으로 私法으로 取扱하는 民事法系の 法律마저 一種의 社會保障法的 性質을 띠고 있는 만큼, 北韓의 모든 法이 곧 行政法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行政權의 主導的 역할을 強調하는 北韓에서, 行政作用과 關聯되지 않은 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行政作用과 直接的으로 關聯된 法으로서 憲法, 民法, 刑法을 除外한 其他 法만을 行政法の 범주에 넣고 이를 考察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北韓行政法에서 우선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우리들이 흔히 使用하는 바와 같은 行政行為의 觀念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들의 制度에서와 같은 行政救濟制度가 전혀 存在할 수 없다는 것도 그로부터 當然히 나오는 結論이라 하겠다.

II. 行政法の 存在形式

北韓法에서 數 많은 行政法規는 主로 法令, 國家主席命令 그리고 政令의 形式으로 存在한다. 여기에서의 法令이라 함은 最高人民會議에서 採択한 法規들을 뜻하며, 政令은 中央人民委員會에서 採択한

것을 이른다. 그러나 이 政令은 그들의 國家主席命令보다 序列이 떨어지는 것으로서 下位法規라고 할 수 있다. 註(42) 勿論 이들 三者間에 嚴格한 位階序列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 三者間에 効力上의 差等이 있음으로써, 上位法規에 어긋나면 下位法規는 効力を 상실하게 되는 規範統制制度가 確立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註(43)

이들 法令과 政令 그리고 主席命令은 다같이 黨施策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은 勿論이며, 어떤 意味에서는 이러한 黨施策에 의한 規範統制가 행하여 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北韓의 行政法規는 주로 委任立法에 依存하고 있지만, 行政權의 裁量의 範圍가 廣範圍함으로써, 制限委任에 의하여서 보다 一般的인 委任에 의하여 成立된다. 勿論 中央人民委員會가 限定된 範圍內에서의 規範統制權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은 行政機關의 決定과 指示에 局限되는 만큼, 이러한 一般委任法規에 대한 統制는 不可能하다고 하겠다.

Ⅲ. 行政行為論

우리의 法律體系에서는 法律行為의 意味의 行政行為觀念이 있지만, 그러한 것이 存在하지 않는다. 國家와 個人間에 權利·義務를 內容으로 한 對立關係가 認定되지 않는 만큼, 이 兩者間에 法律行為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行政行為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때 北韓에서도 김상헌같은 一部 學者가 소련에서의 法

理論에 立脚하여, 國家管理行爲로서의 行政行爲를 주장하여, 國家의 意思表示行爲를 강조한 例가 있었으나, 註(44) 北韓科學院 經濟法律研究所는 이러한 김상현의 주장이 「부르조아」법의 概念이라고 하여 격렬하게 批判함으로써, 行政行爲概念은 받아들여 질 수 없게 되었다. 北韓科學院은 강조하기를, 첫째 行政行爲概念을 採択하는 경우, 行政에 있어 黨政策보다도 行政機關의 意思가 決定的인 比重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 소련에서의 管理規則概念을 管理 또는 行政行爲로 오해함으로써, 「부르조아」法 理論에 依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註(45)

따라서 지금까지도 北韓에서는 行政行爲概念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만 行政機關의 裁量에 의한 具體적인 執行만이 있을 뿐이다.

IV. 行政救濟論

이미 지적했듯이 北韓法에는 우리의 制度에서와 같은 權利概念이 없고, 따라서 法律行爲의 行政行爲도 있을 수 없다. 이 점에서 볼 때, 北韓法에서 不法的인 行政行爲에 對한 救濟制度를 찾아 보기는 不可能한 일이다. 더욱이나 對立當事者間의 行政訴訟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北韓憲法第55條에 의거하여 市民은 申訴와 請願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어느정도 行政救濟的인 역할을 당할런지는 의문스럽다. 그리고 北韓의 現行憲法上 損害賠償制度나 損失補償制度를 規定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러한 부

문에서 行政救濟制度가 存在한다고 보기 어렵다. 法理論적으로 認定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具體적인 節次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制度自体가 否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第3節 土地法

I. 土地法の 意義

北韓法上の 土地法이란, 國家의 모든 土地關係를 規制하는 法이다. 土地法은 北韓의 經濟的條件을 그때 그때 그대로 반영하는 性質의 것이므로 「法律的上部構造의 一部」註(46)를 이루며, 어떤 法에도 종속하지 아니하는 獨立된 法部門이라고 풀이한다.

해방후 土地改革을 실시한 北韓은, 그 改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적지않은 量의 成文土地關係規定을 그때 그때 제정하여, 이것을 土地法の의 주된 法源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이렇게 제정된 規定들도 經濟救造의 變化를 쫓아가지 못하여 언제나 새로운 法の 제정을 기대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1977年에는 그동안의 土地關係法을 綜合하는 의미를 지니는 새로운 成文綜合法典으로서의 「土地法」을 제정하였다.

II. 土地法の 內容

土地法은 6個章으로 되어 있고 全文 80個條에 이르는 比較的

커다란 法이다.

第1章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土地는 革命의 高貴한 전취물」이라 이름붙여, 우선 土地라는 것은 土地改革을 비롯한 共產革命을 통해서 爭取한 高貴한 것이라 概念하고 (1條1項), 全國土를 効率的으로 이용 管理하기 위하여 農業土地, 住民地區土地, 山林土地, 産業土地, 水域土地 그리고 特殊土地의 여섯가지로 나눈다. (7條1項). 그러나 어떤 土地를 莫論하고, 그 이용과 管理에 대한 監督統制는 國土管理機關이 統一的으로 하고, 또 그 國土管理機關은 各級人民委員會와 政務員 및 行政委員會에 의하여 指導된다고 한다 (7條2項).

第2章은, 土地는 國家와 協同團體만이 所有할 수 있다고 하고, 이중 協同團體所有土地는 그 團體成員의 集團的所有임에 반하여, 國家所有土地는 全體國民의 所有라고 区分規定한다. (9條에서 11條) 또 國家的所有의 範圍는 무제한 한 것이어서 (10條), 社會主義經濟의 進展에 따라 協同團體所有土地를 흡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2條), 이와 같이 土地는 窮極的으로 國家만이 支配할 수 있는 것이로되,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 各機關, 企業所, 團體 또는 國民들이다. (13條).

個人은 土地를 所有할 수 없는 것은 勿論이고 個人的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도 없다는 것은 極히 당연한 것이나, 다만 協同農場員인 個人에게는 20 ~ 30평의 터밭을 個人的으로 이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13條2項). 이것은 이미 施行되고 있는 協同農場規

約의 내용을 다시 규정한 것이다.

第3章은 国土建設總計劃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는데, 이 計劃을 통해서 国土를 合理的으로 開發利用케 하고, 整理美化하며, 國家의 全般的인 살림살이를 計劃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14條1項). 이 章은 5個條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計劃의 定義(14條), 基本方針(15條), 이 計劃을 適用하게 될 그 展望期間(16條), 內容(17條) 그리고 承認機關(18條)을 規定하고 있다. 이 綜合計劃은 国土의 保護, 建設 및 管理의 指針이 되며 北韓土地法 施行의 基本的인 指針이 되고 있다. 第4章 이하의 여러 規定들은 어느것이나 이 計劃遂行을 위한 具體的인 規範들이 다.

第4章은 「土地保護」라 이름하여 모두 24個條文으로 이루어져 있다. 保護의 초점은, 江河川의 整理와 山林의 造成에 두고 있고, 国土管理機關, 農業指導機關 및 土地利用機關이, 国土建設總計劃에 따라, 그들의 責任아래 組織, 進行해 나가야 한다(19條), 土地保護의무는 이들 國家機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國民들의 積極參與를 要請하고 있다. 江河川과 湖, 저수지에 더러운 물을 버릴 수 없대는가(26條), 機關, 企業所, 學校, 團體 및 國民들에게 봄과 가을에 나무심기를 積極 指示하는 (32條2項) 따위가 그것인데 이것을 위반하는 境遇에는 이 法에 의하여 直接 処罰된다(80條2項).

第5章은 「土地建設」이라 이름붙여 20個條文(43條에서 62條

까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 말하는 國土建設의 目的은 農業의 工業化 및 現代化를 이루고, 農業生産을 높이며, 國土의 면모를一新하자는데 있다(43條). 이 目的을 이룩하는 方法으로, 이 法이 내어 주는 事業은 다음과 같다. 즉, 水利事業의 전개, 土地整理事業, 土壤調查事業, 간척지개간사업, 都市와 農村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作業, 都市와 그 주변에 공원과 유원지 만들기, 道路註(47) 建設事業 沿岸과 領海를 開發하여 水上運輸를 發展시키고, 또 水産資源을 保護하는 일이, 곧 그것이다(44條에서 62條). 이들 事業은 모두, 國土管理機關과 農業指導機關을 비롯한 해당기관, 기업소 및 團體들이, 國土總建設計劃에 의하여 計劃적으로 進行되어야 한다(43條 2項)

第6章은 「土地管理」라 이름하여, 各土地의 意義와 그 管理方法을 具體적으로 規定한다(63條에서 80條까지). 農業土地는 오직 경작할 수 있는 논과 밭을 뜻하는 바, 논과 밭은 管理者가 임의로 묵히거나 버릴 수가 없고, 이것을 農業生産 以外의 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規模 대상에 따라, 해당 國土管理機關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中央農業指導機關 또는 政務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5條). 農業生産 以外의 目的으로 使用할 수 있는 境遇와 그節次는 同法 66條와 67條에서 規定되고 있다. 農業協同組合은, 그 必要에 따라, 논밭을 서로 바꾸어 경작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上級農業指導機關의 許可가 必要하다.

住民地区土地는, 市, 邑, 勞動者區의 專用用地와 그 부속지, 共同利用

地와 農村建設地인데, 그 管理는 中央의 都市機關과 地方行政委員會가 担当한다 (69 條).

山林土地는, 山林이 이루어져 있거나, 이를 豫定인 山野와 그 안에 있는 여러 利用地를 말하는데 (70 條). 管理機關의 義務중 가장 重要한 것은, 山林濫伐에 대한 감시와 火田을 이루지 못하도록 감시하는데 있다 (71 條).

産業土地에는, 工場, 鉉山, 發展施設 등 産業施設이 차지하는 土地와 그 부속지가 여기에 속하는데 (72 條), 이 땅은 必要以上으로 넓게 차지하게 될 수는 없다 (73 條).

水域土地는, 沿岸, 領海, 江河川, 湖, 저수지, 관개용수로 등이 차지하는 일정지역의 땅이 여기에 속하는 바, 이 土地를 開發利用하거나 施設物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나 特別한 許可가 必要하다 (74 條).

特殊土地에는 革命戰蹟地, 革命史蹟地, 文化遺蹟地, 保護區域, 軍事用土地 등 특수목적에 이용되는 땅이 여기에 속하는바, 이 땅의 管理機關으로서, 때로는 軍部隊도 參與한다 (75 條)

이와 같이 모든 土地의 利用과 管理에는 언제나 여러 許可機關의 許可 또는 승인이 必要한 바, 許可된 內容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國家的要求가 있을 때는, 또 언제나 취소될 수 있다 (76 條).

第4節 民法

I. 民法의 体系

北韓은 아직 統一成文民法典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法典의 編別에 따른 体系의 分析은 不可能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法部門중 매우 重要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民法이 理論的으로 어떻게 体系化될 것인가라는 問題는, 法典이 欠缺되고 있는 事情때문에서도 더욱 緊要하고, 重大한 일이되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北韓當局은 1958年2月1日 民法典 및 民事訴訟法典 作成準備決定을 내리면서, 民法典草案의 体系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관하여, 일찍부터 腐心한 바 있다. 註 48)

北韓의 民法理論은 그밖의 法分野와 마찬가지로 소련法理論의 影響을 크게 받아 온 것이 事實이기 때문에 民法의 体系 역시 소련式의 것을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近來에 와서 金日成主体思想의 강조와 소련에 대한 敬遠이라는 基本政策은 필경 소련民法理論을 적지않은 部分에서 배제하게 되겠지만, 民法理論이 發展되지 못한 實際 때문에, 결국은 소련民法의 体系와 대차가 없을 줄 생각된다.

○ 이로 미루어 보아 北韓의 民法의 体系는 大体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첫째, 家族法을 民法에서 떼어내어 完全히 獨立된 法部門으로 다

룬다.

둘째, 家族法을 빼어 낸 民法은, 판데크텐體系를 大体로 따르나, 相統法만은 民法속애 包含시키고 있다.

셋째, 따라서 民法에서 다루어지는 큰 分野는, ①法律關係의 主体와 法律行為, ②所有權, ③債權, ④相統인 것이다.

II. 民法의 法源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北韓에는 統一民法典이 없다. 그러므로 民法의 不文規範이라고 할 수 있는 黨策 소위 民主的 法意識과, 成文規範인 各單行法文件이 있다 後者에 比한 前者가 차지하는 絶對的인 위치는 애써 이루어 놓은 成文化를 空虛化시킬 때가 자주 發生하여, 이런 뜻에서 各 成文規範의 法的 拘束力은 半減될 때가 많다.

○ 民法的 効力을 지니는 成文規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① 北朝鮮土地改革에 대한 法令 (1946.3.5,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決定)

② 重要産業國有化法令 (1946.8.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決定 第 58 号)

③ 北朝鮮의 男女平等權에 대한 法令 (1946.7.30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決定 第 54 号)

④ 物品去來 및 현금결제에 관한 결정서 (1946.11.25, 北朝鮮臨時委員會 결정 第 115 号)

- ⑤ 國家經濟機關, 國營企業所 및 공리단체호상간의 契約制度와 救濟制度 確立에 관한 決定書 (1948.2.29 北朝鮮人民委員會決定 第120号)
- ⑥ 地下資源, 山林地域 및 水域의 國有化에 관한 決定書 (1947.12.22 北朝鮮人民委員會 法令 第31号)
- ⑦ 沒收財産管理에 관한 規定 (1948.11.16, 內閣決定 第90号)
- ⑧ 農村에서 貧農民들에 대한 富農들의 高利대행위를 禁止할 데 관한 決定 (1952.10.30 內閣決定)
- ⑨ 製品供給契約에 관한 規定 (1956.8. 第55号)
- ⑩ 基本建設工事に 대한 施工契約規定 (1956.1.10 內閣決定 第4号)
- ⑪ 國營企業所に 관한 規定 (1955.5.21 內閣決定 第52号)
- ⑫ 時効에 관하여 (1956.10.5 常任委員會 政令)
- ⑬ 製品供給契約에 관한 새로운 規定 (1962.12.6 內閣決定 第69号)
- ⑭ 憲法 (1972)

Ⅲ. 民法의 基本原理

보통, 社會主義的民法의 對象은, 價值法則과 勞動에 의한 分配原則의 作用을 考慮함과 關聯된 財産的關係 및 이에 關聯된 人格的關係라고 한다. 그러나 이 財産的關係는 個人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關係뿐만 아니라, 國家機關 서로 사이, 國家機關과 社會團體 사이, 國家機關 또는 社會團體와 公務員 또는 個人 사이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點에서 個人 사이의 私的生活關係를 規律하는 것을 民法이라고 보는 西方自由諸國의 民法과 根

本的으로 다르다. 바로 이 점이北韓民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北韓法을 社会主義諸国法과도 또 다른 큰 특성이 있다.

첫째,北韓法은 아직 階級鬭爭의 武器이며, 國家와 黨의 政策을 實現하기 위한 하나의 武器이기 때문에, 註(49)民法 역시 國家統制法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 民法을 통해서 여러가지의 所有秩序가 規制되고, 또 民法을 통해서 國家計劃經濟가 實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社会主義的所有를 三段階로 나누고 있는 內容은 前者에 관한 實例이고, 製品供給關係나 農產物收買關係에 관한 各種契約에 관한 規定들은 바로 後者에 관한 實例인 것이다. 둘째,北韓民法은 社会主義의 法發展段階의 初歩에 놓여 있다. 소련民法이 이미 이루어 놓고 있는 法의 發展을 正面으로 배격한다. 註(50)이 것을 그들은 主体思想의 表現 또는 마르크스·레닌主義에의 充實이라고 하나, 이러한 態度로 말미암아北韓民法은 權利性보다 義務性이 強調되는 行政法的인 것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가지의 基本的原理는 民法全般에 걸쳐 흐르고 있다. 다음에서 우리는 各個所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具體化되어 民法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IV. 法律關係의 主体와 法律行爲

北韓民法은 經濟關係를 規制하면서, 그 당사자들 사이의 權利와 義務關係, 즉 法律關係를 設定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經濟關係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行政-組織的인 종속성과 결부되지 않고 그들의 独自性和 결부된 經濟關係」註(51) 만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 따라서 民法上的 法律關係는 一定한 經濟的 独自性を 가진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設定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民法上 法律關係의 당사자는 國家, 個別的 國家機關, 企業所 및 社會協同團體 그리고 公民들이라고 한다. 또 民法上 法律關係의 당사자로서의 國家機關, 企業所 및 社會協同團體를 특히 法人이라 부르고 있다.

이들 法律關係의 主体를 認定함에는, 이들이 바로 社會主義的所有 體制의 担任者로서, 혹은 國家 및 黨의 政策遂行者로서 機能하며 또한 그 目的에 이바지 하게 된다. 이들 主体중 특히 國家機關, 企業所, 社會團體들은 法이 정한 範圍안에서만 權利能力이 認定되며 法이 定한 方法만으로써만 法律行爲를 하게 된다. 또 그들의 權利能力의 發生과 消滅도 法定되는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適用되는 이러한 제약은 國家에 대해서는 絶대로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國家는 「프로레타리아」 独裁機能을 遂行하는 万能的 權力체이기 때문이다.

V. 所 有 權

社會主義者들이 즐겨 쓰는 社會主義的 所有形態는, 國家的所有(또는 全人民의 所有), 協同體의 所有 그리고 個人的 所有이다. 모든

生産手段은 國家的所有와 協同體의所有 兩의 대상이 된다. 協同體의所有는 共產主義에로의 移行過程에서 潛定的으로 認定된 形式이어서 社會主義가 共產主義化할 때는 이러한 潛定的인 形式은 사라진다고 한다.

國家的所有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모든 自然資源, 重要工場, 企業所, 港灣, 銀行, 交通運輸 및 通信機關 등이나, 國家的所有의 대상은 비단 여기에 국한될 수 없고, 理論上 어떤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 대상이 一定範圍에서 制限을 받는 協同體의所有 및 個人所有와 크게 다르다.

協同體의所有는, 協同經理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集團的所有를 뜻한다. 이 所有對象의 範圍는 그 協同組合의 性質에 따라서 定해지며 또 制限을 받게 된다.

아울러 生産手段을 그 所有의 對象으로도 삼을 수 있는 점에서 國家的所有와 흡사하나, 所有의 範圍, 所有權의 內容, 權利實現의 方法 등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 個人的所有는 個人的消費를 위한 所有이다. 個人財產의 對象으로 되는 것은, 穀物, 日用品, 裝身具, 一定量의 家畜家禽, 간단한 農機具 그리고 所得의 주된 內容을 이루는 貯金 및 無體財產등이다.

그러나 個人財產의 範圍는 社會的 經濟的階層에 따라 처음부터 다르게 定해져서 一定하지가 않으며, 個人財產으로서 法的保護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것들이 不勞所得의 源泉으로 使用될 수 없는 점에 特徵이 있다.

위의 세가지 形態의 所有는 社會主義 社會의 與件에 따라서 國家間에 甚지 많은 차이가 있으며 또 北韓社會의 進展에 따라서도 그 內容이 바뀌어질 可能性이 크다고 하겠다.

VI. 債 權

○ 北韓民法의 債務法分野에서 規制된다. 이 分野에서는, 債務의 發生, 債務의 履行, 債權讓渡, 債務引受, 債務의 保障, 債務의 消滅등 소위 韓國民法의 債權總論에 해당되는 部分이 理論적으로 다루어지고, 다음에는 여러 典型契約, 不法行爲, 不當利得, 無任(事務)管理 등도 다루고 있다.

○ 北韓民法의 이分野에서의 가장 큰 特徵은 契約이라 할 수 있다. 典型契約중 供給契約, 基本建設施工契約, 輸送契約, 農產物收買契約, 住宅賃貸借契約 등은 그들의 社會主義的統制計劃의 實現策으로 活用되는 매우 重要한 것들인데, 이 契約들의 共通點은 締結, 相對方選拔, 內容의 自由가 거의 認定되지 아니한 點에 있다. 契約의 自由가 保障되지 아니한 이러한 것도, 그들은 契約이라고 보며 특히 社會主義的 契約이라고 즐겨 부르고 있다.

위의 같은 特殊形式의 契約이 契約法의 中心을 이루는가 하면, 그 반면 韓國法에서 認定하는 組合契約은, 北韓의 사정상 뜻이 없으므로, 認定하지 않고 있다.

著作權과 創意考案權을 民法의 對象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北韓學者 사이에 論難이 되고있다. 그러나 支配的인 見解는 이 權利 역시 民法의 領域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 理論은 이들 權利를 民法典에 담고 있는 소련民法^{註(52)}에 의해서 影響된 바 크리라 보겠다.

VII. 相 統

北韓에 있어서도, 社會主義諸國의 一般的性向에 따라 相統制度를 認定하며, 또 相統은 個人財產權의 取得, 移轉 및 消滅에 關한 것 이므로 民法의 한 分野로 다루고 있다. 相統制度를 認定하는 實際的 根拠는 被相統人의 自由意思를 그의 死後에까지도 연장시키고 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相統人들에게 物質的惠沢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이 結果 違言, 相統은 法定相統人이 없는 경우에만 適用되어, 法定相統이 相統制度의 原形이 되고 있다.

相統順位는, 第一順位가 子女, 配偶者 및 勞動能力 없는 父母, 第二順位가 勞動能力 있는 父母, 未成年兄弟姊妹 및 被相統人이 死亡하기 前 1年 以上 被相統人으로부터 扶養을 받아 온 勞動無能力者, 第三順位가 祖父母 및 成年兄弟姊妹이다.

相統財產의 範圍는, 個人財產 以外의 特許權, 著作權, 榮譽勳章등도 包含될 수 있다. 그러나 私所有로 認定되는 財產의 範圍가 極히 좁고, 社會主義的 個人財產蓄積의 歷史가 極히 짧은 北韓에서는, 相統法이 適用될 여지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이다.

또 相統이 행해지는 경우에도 北韓의 現實은, 相統制度에 관한 成文律이 없기 때문에, 우선 北韓의 慣行이 適用될 여지가 많고, 社會主義的 相統原理은 相統에 관한 紛爭이 일어났을 때에 주로 適用될 것이다. 註(53)

第 5 節 家族性

I. 家族法の 体系와 法源

家族法은 婚姻, 血緣關係, 人名關係 및 家族間의 扶養關係 등으로부터 생기는 非財産的 여러關係 및 그에關聯된 財産的인 여러關係를 規律하는 것으로서, 民法과는 獨立된 法部門을 이루고 있다.

北韓家族法은 婚姻法, 親子法, 좁은 뜻에서의 家族關係法 및 後見 및 保佐法의 여러 小家族法으로써 構成되어 있다.

이들 小家族法들은 原則的으로 모두 獨自的인 原理로써 이루어져 있어 각각의 保護利益이 다를 수 있다. 例컨대 婚姻無効의 效果가 이미 發生된 親子關係의 效果를 否定하는 西歐傳統法理論은, 家族法分野에 관한 한 全적으로 배제된다.

北韓家族法도 아직 統一成文法典의 形式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것이 家族法인가 즉 法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問題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더구나 家族法은 그 傳統的이고 沿革的인 性格으로 말미암아 韓國의 傳統的家族法意識이 크게 法規範으로

作用하기 때문에, 法源의 把握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로 미루어 北韓家族法은 成文의 單行規範을 비롯해서, 民主的 法意識 그리고 最高裁判所全員會議의 指導的指示 따위로써 이루어지고 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成文規範 중 중요한 것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북조선의 남녀평등에 대한 법령
- ②동 법령시행세칙 (1946.9.14, 북조선임시위원회 결정 제78호)
- ③협의이혼절차를 폐지하고 재판이혼에만 의하게 하는 규정 (1956.3.8, 내각결정 제24호)
- ④국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 (1955.3.5, 내각결정 제28호)
- ⑤이혼사건심리절차에 관한 규정 (1955.3.16, 사법성규칙 제9호)
- ⑥시효에 관하여
- ⑦형법 (1950.3.3,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 제253조 내지 256조
- ⑧헌법 (1972)

II. 家族法의 指導原理

北韓家族法의 바탕을 이루는 理論은 勿論 맑시즘의 家族과 法의 理論이다. 一夫一妻制, 婚姻과 離婚의 自由, 未成年 子女에 대한 共產主義式教育, 母性과 未成年 子女에 대한 國家的配慮, 家庭의 産業에 의 轉化 등에 관한 일들은, 바로 共產主義式法理論의 實踐課題

이다.

그러나 위에 내어진 内容들은 社会主義諸국이 모두 採択하고 있는 것들이므로 이것들을 北韓家族法の 特色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北韓家族法の 특색은 오히려 다른곳에 있고, 北韓家族法은 그러한 특색에 의해서 指導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 法은 위에서 내어진 實踐課題를 包含한 맑시즘에 의해서 指導된다. 맑시즘의 法과 家族理論은 社会主義社會의 進展에 따라 可變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北韓도 이 部類에 속하는 社會이므로, 그 家族法 역시 그러한 法과 家族理論에 의하여 指導될 것이다.

둘째, 北韓家族法은 北韓社會의 傳統的家族制度에 의해서 指導된다. 傳統的家族制度의 여러 規範은 때에 따라서 共產主義의 一般理論과는 相反되면서 北韓家族法の 산 規範으로 作用하고 있다.

北韓家族法上에는 이와같은 規範이 얼마든지 實在하고 있다.^{註(54)} 셋째, 이 法은 朝鮮勞動黨의 家族 및 法에 관한 政策에 의해서 指導된다. 黨策은 成文家族規範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또 소련 法理論의 模倣을 意識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北韓의 現實에서는 매우 實質적이고 強力한 指導原理가 된다.

以上에 우리는 北韓家族法の 指導原理를 보아왔다. 오늘날 社会主義諸國은 家族의 消滅理論을 받아들이기는 커녕 오히려 社会主義 家族의 強化라는 새로운 理論을 採択하고 있다. 家族의 強化는 家族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大家族制度的 家族理論과 어느면

相通하는 점이 있어, 이 두 이론이 調和되는 過程에서 적지 않은 특성이 發見될 수 있을 것이다.

Ⅲ. 婚 姻

9 婚姻法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問題는 婚姻의 成立問題, 婚姻의 無効에 관한 것, 婚姻의 効果에 관한 것, 그리고 그 解消에 관한 것 들이어서, 婚姻法의 內容上의 體系에 있어서는, 韓國法 내지는 西歐傳統法과 비슷하다.

婚姻이 成立되기 위하여는, 實質的要件과 形式的要件이 갖추어져야 한다. 婚姻成立의 實質的要件으로서는 合意, 婚姻適令, 重婚禁止, 近親婚制限 등이 있는데, 이 각각의 問題는 해석론상 여러가지 問題들이 있으나, 특히 이중 近親婚制限問題에 관해서는, 傳統的家族制度에 의해서 規律받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많은 특성이 나타난다. 形式的要件으로서의 登錄의 性質에 관해서도 特性이 認定된다. 北韓法上의 婚姻登錄이 갖는 意義는, 이미 實質적으로 成立된 婚姻關係를 宣言해주는 것이 아니라, 婚姻登錄을 通하여 國家社會가 승인하는 듯한 느낌이 짙다.

北韓婚姻法은 소련法에 따라 婚姻無効라는 概念은 認定하나 婚姻取消은 認定하지 아니한다. 또 그 無効의 効力은 當然無効인 것이 아니고 언제나 法院에 의하여 無効가 宣言되어야 그 効力이 發生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取消과 그 構造를 같이 하나, 無効로 宣言된 그 効力이 婚姻成立 때 까지 溯及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

다.

婚姻이 成立하면, 夫婦의 姓 問題라든가 家籍 등에 관한 것이 問題로 될 수 있으나, 婚姻成立의 中心的인 効果는 역시 同居扶養義務의 發生 따위와 같은 夫婦 사이의 身分上的 效果 問題와, 夫婦財產契約이라든가 法定財產制 따위와 같은 財產上的 效果問題이다.

夫婦의 姓은, 夫姓追從, 別姓, 共同姓 또는 合姓 등 여러가지 社會主義立法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北韓의 現實은 韓國의 慣行인 別姓의 原則을 여전히 따르고 있고, 戶籍制度를 全廢하고 있는 北韓에서는 婚姻이 家籍의 移動問題는 일으키지 않는다. 夫婦 사이에는 同居扶養義務가 發生되나, 勞動力의 需給計劃이 婚姻生活에도 미칠 수 있으므로, 同居義務는 그러한 한도에서 언제나 緩和될 수 있는 것이 커다란 特徵이 될 수 있다. 財產契約은 自由로이 締結할 수 있는 法律構造를 취하고 있으나, 法定財產 보다 여자에게 不利한 契約은 締結할 수 없다. 그러나 北韓住民의 個人財產이 極히 미미한 現實로 미루어 보아 이 問題는 그리 現實的인 뜻이 없다.

離婚의 自由는 理論上 婚姻의 自由에 못지않게 保障되어 있다.

그러나 離婚후의 子女養育問題라든가 또는 韓國的思考의 存続 나 아가서는 黨에 의한 實質的인 干涉 등으로 實際는 여러가지로 制約을 받게 될 것이다.^{註(5)}

IV. 親 子

親子法은 家族法의 一部로서 原則적으로 民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한다. 北韓親子法의 가장 커다란 特徵은, 親子關係가 父母의 婚姻의 成立, 不成立과 關係없이 이루어지는 점이다. 그리고 親子法은 未成年子女의 利益의 保護를 主眼으로 하나, 境遇에 따라서는 女性 특히 母性의 保護도 規定하고 있다.

北韓法은 嫡出推定問題에 관하여도 大陸法理論을 따르고 있는데, 소위 社會主義家族의 強化라는 要請에 따라, 母에게 父의 指定權을 認定하고 있다.

親子關係가 確定된 親子 사이에는, 扶養의 權利義務인 財産的인 關係와, 子女에 대한 教養을 內容으로 하는 人格的 關係가 成立되는데, 親의 그러한 義務는 「社會와 人民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不屈의 革命家, 知·德·體를 겸비하는 共產主義的인 새로운 人間으로 養育할 것」을 그 內容으로 삼는다.

親子 사이에는 物權上 또는 債務上 自己의 財産을 각각 所有하며 또한 각각 処分하여 그 權利와 義務는 原則적으로 個別的이다. 그러나 親子 사이의 財産的關係는 그들 사이의 扶養이 중심된 問題이다. 親子 사이의 扶養은 未成年子女를 위한 父母의 扶養義務, 成年子女를 위한 父母의 扶養義務, 父母에 대한 子女의 扶養義務인,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前者가 無條件의임에 비하여, 後二者는 條件적으로 認定된다. 前者는 財産이 있건 없건 勞働能力이 있건 없건, 扶養料는 支給되어

야 하고, 그 比率은 法定되어 있다. 반면, 後二者는 扶養을 請求할 수 있는 者에게 勞動能力이 없고 또 援助를 必要로 하여야 하는 要件이 具備되어야 認定된다. 그런데 父母에 대한 子女의 그 義務는, 北韓社會의 家族制度的意識으로 말미암아, 다른 社會主義諸國보다 한결 더 강조되는 特徵이 있다.

○親權의 박탈제도도 인정한다. 親權의 박탈 여부는 그 社會의 倫理道德과 직결되는 問題인데, 北韓에서는 法律外的인 要因 말하자면 政治的인 要因이 作用되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親權剝奪의 原因으로서는 養育義務의 不履行, 親權의 濫用, 子女에 대한 가혹행위, 親의 反道德的·反社會的 行爲에 의하여 子女에게 有害한 影響을 줄데, 알콜中毒 또는 麻藥中毒 등이 주로 問題가 될 것이다.^{註(56)}

北韓 親子法이 소련法理論, 傳統的家族制度理念, 黨策의 세 가지 理念에 의하여 指導되고 있음은 그밖의 家族法分野와 마찬가지로이다.

○子女의 保護·教養에 대한 國家의 權利義務를 강조하는 반면에 父母의 權利義務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北韓親子法의 特色이다. 國家가 家族生活의 經濟的인 面을 充分히 調達하고, 子女에 대한 保護·教養은 父母에게 맡기려 하는 것이 지금의 社會主義法의 一般이나, 後進社會主義經濟狀態에 있는 北韓에서는 社會가 져야 할 義務를 親에게 지우고 있는 감이 짙다.

V. 家 族

○共同生計를 維持하는 一定親族 中에서 婚姻法과 親子法의 規律을 받지 아니하는 자 사이의 法律關係를, 社會主義家族法에서는 보통 기타의 家族成員間의 法律關係라 이름하에 다루고 있다. 그들 서로 사이의 法律關係도 人格的·非財産的 關係와 財産的關係의 兩面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어떠한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關係가 存在하는가에 關한 問題는 家族의 概念을 明言하지 아니하는 北韓 家族法에서는 家族의 範圍를 찾는데 直接的인 貢獻을 하게 된다. 따라서 北韓法上의 家族이란 위와 같은 法律關係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現實的인 家族經濟生活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現實生活을 같이하는 자로서는 보통, 夫婦, 親子 등이 중심이 되고 그 以外에 경우에 따라서 형제자매, 祖孫 또는 그밖의 친척이 있다. 이들 家族들 중 夫婦와 親子는 婚姻法과 親子法에 의하여 그들의 法律關係가 規律되기 때문에, 狹義의 家族法에서의 주된 關心은, 夫婦와 親子를 제외한 그밖의 家族成員들의 法律關係 規制에, 쏠려지게 된다.

그밖의 家族成員으로서의 法律關係가 成立하는 당사자로서는 보통 祖父母와 孫 사이 兄弟姉妹 사이, 繼父母와 繼子 사이 또는 養育者와 被養育者 사이라고 하나, 傳統的家族制度意識이 남아 있는 北韓에서는 叔姪사이 또는 丈人文母와 사위 사이, 혹은 媿父母와 며느리 사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共同家計를 이루고 있는한, 家族關係에 들어서서 一定한 權利義務를 지게 될 것이다.

그밖의 家族成員 사이의 法律關係는, 그 內容의 多樣性이라는 點에서 보아, 夫婦 사이 또는 親子 사이의 그것에 미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이들 서로 사이의 義務의 履行은 二次的 내지는 補充的인 効力を 갖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祖父母와 孫과의 法律關係는, 親이 없는 경우, 또는 親이 子女를 돌볼 수 없을 때 혹은 돌보지 않을 때에 만 發生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子女가 親과 祖父母와 同居하고 있을 때 祖父母가 孫을 保護·養育을 하는 것은 法律的인 關係가 아니라 事實上的 關係로 이해되는 것이다.

第 6 節 刑 法

I. 刑法의 基本概念

1. 刑法의 階級的 本性

北韓은 1950.3.3에 그들의 刑法(全文 301條)을 制定하였는바, 그들은 犯罪가 되는 行爲와 그렇지 않는 行爲와를 区分키 爲해서가 아니라, 共產革命에 의하여 전복된 소위 "搾取階級"을 鎮壓하고 黨政策을 實現하기 위한 強力한武器로서 刑法을 認識키 始作하였다.

그리하여 北韓의 法學者들은 刑法을 「犯罪의 實質的 概念을 定式化함으로써 그의 階級的 本性을 밝히고, 社會發展과 階級鬭爭의 現實에 相應하게 언제나 社會的 危險性이 있는 모든 行爲와 鬭爭

한 勞動階級の 단호한 의사와 決議를 表現한 것」註(57)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같이 刑法에서의 階級的 本性を 강조하는 理由는 다음과 같다.

즉 生産手段과 私的 所有가 없었고, 社会階級이 存在하지 않았던 原始共同體의 群集下에서는 人類는 國家와 法, 따라서 刑法도 알지 못하였으나 階級社会로서의 古代奴隸社会, 中世封建社会가 登場하자, 少数特權階級이 自己들의 經濟的 基礎를 철저히 保護하는 手段으로 刑法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註(58)

그리하여, 「프로레타리아」階級の 獨裁實現에 沮害要素가 될 罪刑法定主義도 否認하게 되고, 類推解釈도 可能하게 하는 根拠로서, 刑法의 階級的 本性を 提示하게 되었다.

그 結果 刑法은 支配層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階級이 被支配層으로서의 「부르주아」階級을 支配하고, 그들의 反革命(犯罪)을 抑壓하는 道具로서 作用하게 된다고 한다. 註(59)

2. 刑法의 特徵

北韓刑法의 特徵을 形式上的 特徵과 內容上的 特徵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形式上的 特徵을 보면 北韓의 刑法은 다른 法들과 달리, 成文法의 形態를 취하고 있으며, 大陸法系統 國家의 刑法體系와 흡사한 體系를 취하고 있다. 이는 北韓刑法이 模倣한 1926年의

러시아-소비에트 聯邦社會主義共和國 刑法이 西歐의 刑法體系를 參考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 인것으로 여겨진다. 註(60)

다음으로 內容上의 特徵을 보면, 첫째, 소위 人民民主主義的 獨裁實現을 위한 規定을 많이 內包하고 있는 점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人民民主主義는 「프로레타리아만을 위하고 資本家 富者에게서 自由를 剝奪하는 것이나, 註(61) 이러한 自由剝奪의 方法으로서, 刑法의 適及効의 可能性 부여 (北韓刑法 § 17) 와 刑事訴追時効特例) (同法 § 60) 가 있다.

둘째, 刑罰의 一般豫防的 性格을 強調하고 있다. 그리하여, 刑罰을 犯罪者의 犯罪行爲에 대한 非難과 應報로 보지않고, 一人의 犯罪者를 處罰함으로써 餘他人民들에게 威嚇感을 주고 <勞動하는 人民들의 完全한 解放>을 가져오자는 것이다.

셋째, 刑法에다가 소위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를 規定하고 있다. 즉 <民主的 共產主義 理論>,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 原則을 平和的 共存原則으로 代置하려는 理論>같은 각종 修正主義 理論의 發生을 防止키 위해, 國家主權敵對에 關한 罪, 國家管理侵害罪 등을 設定해두고 있다.

넷째, 소위 「人民民主主義的 遵法性 原則에 따르고 있다. 「人民民主主義的 遵法性 原則」이란, 文言上으로는 「有罪判決을 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行爲들에, 刑事法令에 의하여 豫見된 犯罪構成要件이 存在한다는 것을 確定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註(62) 民主國家에서의 罪刑法定主義에 해당되는 것이나, 實際 法運用에 있

어서는 兩者間에 엄청난 差異가 있다.

다섯째, 刑事責任의 個別化 原則에 따르고 있다. 그런데, 北韓刑法에서의 個別化의 原則은 民主國家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刑事責任과 可罰性이, 遂行된 犯罪와 犯罪者 自體의 社會的 危險性 정도 그리고 그의 罪責性의 정도에 의하여 規定된다는 것을 意味한다.⁽⁶³⁾

3. 刑法의 對象

北韓刑法의 對象을 다른 法 部門과 區別함에 있어서 이것을 더욱 明白히 하기 위하여서는 刑法과 인접 法 部門과의 關係를 解明하는 것이 必要하다. 특히 北韓 刑事訴訟法(1950.3.3 制定)과의 關係를 살펴보는 것이 必要하다.

北韓 刑法은 犯罪의 概念과 그 形態, 刑事責任의 基礎와 條件, 刑罰의 種類와 形態 및 그것들의 適用節次를 規定하고 있으며, 刑事訴訟法은 豫審二檢察機關과 裁判所의 活動限界, 刑事責任의 導入의 節次와 條件, 裁判所에서의 事件 審理節次와 條件, 訴追의 提起 및 被訴者의 權利保護등을 規定하고 있다.

結局 刑法의 對象은 犯罪와 刑罰의 實體에 관한 것이며, 刑事訴訟法은 그 節次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⁶⁴⁾

4. 刑法의 法源

北韓에서의 刑事法令 存在形態는 時期別로 달리하고 있다.

8.15 解放後에는 소련軍 治下에서 發해진 個別的인 布告, 決定, 命

令, 指示등 雜多한 것이 刑法의 源泉이 되었으며, 소위 「人民共和國 憲法」(1948.9.7 公布)을 採択한 後에는 立法은 最高人民會議에서만 한다는 原則을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內閣決定(1972年 社會主義憲法 採択以後는 政務院決定)에 의한 白地規範들의 公布可能性을 排除하지는 않았다.

現行 刑事法令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成文刑法典

이것은 北韓이 1950年 3月 3日에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에서 採択한 것으로서, 刑事關係規律의 大宗이 되는 法規인 것으로 보인다.

2) 個別的 独立的 刑事法令

이것은 刑法典의 個別的 法條項들을 補充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刑事特別法的 性格을 띤 것으로 보인다.

例컨대, 1951年 1月 5日 軍事委員會 決定 第44号 <<敵에게 臨時 強占當하였던 地域에서의 反動團體에 加担하였던자들을 処罰함에 關하여>>와 같은 것이 있다.

3) 다른 法令 또는 法中에 實體法的 刑事規範을 包含한 刑事法令들, 例컨대, 刑事訴訟法, 裁判所構成法, 專売品團束에 關한 規定 등에 包含된 刑事法令 들이다.

II. 刑法의 基本原則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北韓刑法은 刑罰의 一般豫防的 性格을 重視함과 더불어, 「犯罪의 社会的 危險性을 強調하고 있다. 또한 北韓刑法은 刑罰의 目的을 「應報」라기 보다는 「改善」이라고 보는 面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特性은 1922年 및 1926年의 러시아共和國刑法에서 연유하는 것으로서 北韓刑法이 소련刑法學의 成果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1. 刑罰法規의 類推適用의 認定

北韓刑法學者들은 1958年 以前の 소련에서 容納되었던 刑罰의 「類推」適用을 극구 擁護하고 있는 바, 註(66) 類推制度가 가지는 現實的 意義로서, 그것은 「階級的 원수들의 새로운 反抗形態와 에 리하게 鬪爭케 하는 것을 可能하게 하고 나아가 (北韓의) 刑事 規範의 發展을 促進시키는데」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소위 「부르조아」 刑法典에 있어서의 擴張解釋 또는 類推와는 그 階級的 內容뿐만 아니라, 그 法律的 構造도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선진한다. 註(67)

어떻든 北韓刑法 第9條는 「犯罪的 行爲로서 그에 直接 該當하는 規定이 本法에 없는 境遇에는 本法 中 그 重要性和 種類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罪에 관한 條項에 準據하여 그 責任의 기초와 犯罪 및 刑罰을 定한다」라고 하여 刑罰法規의 類推를 許容하고 있다.

그런데,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犯罪란 社会的으로 危險한 行為이기 때문에 이 類推의 規定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면 결국 아무런 刑罰法規가 없다고 하여도 <社会的 危險行為 = 犯罪>라는 結論이 간단하게 導出되므로, 刑法의 이른바 保障的 機能은 有名無實化해질 것이다.

2. 刑罰法規의 溯及的 適用의 可能性

北韓刑法은 그 第5條에서 「罪를 犯한 者는 그 行為 當時의 法令에 의하여 責任을 진다」라고 하고 그 第6條에서 「어떤 行為에 대한 刑罰適用을 廢止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責任을 輕하게 하는 法令은 그 法令이 施行되기 以前에 遂行한 行為에 대하여서도 適用한다」라고 하여, 法條文上으로는, 마치 刑法의 効力の 不溯及原則을 宣言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러한 이러한 刑罰法規의 不溯及原則은 北韓刑法上 解釋上の 原則이고 立法上の 原則이 아니기 때문에 立法에 의하여서는 얼마든지 그 例外를 認定할 수 있다고 한다. 註(68)

이러한 意味에서 8.15 解放前의 行為로서 一般的으로 그 行為의 性質이 北韓에 危險한 것이라면, 그것은 犯罪로서 刑事訴追할 수 있다고 한 北韓刑法 第17條나 소위 朝鮮民族解放運動을 反對한 行為에 대한 刑事訴追의 時効를 裁判所의 裁量에 의하게 한 北韓刑法 第60條는 이러한 意味에서 그 存在의 根拠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例外를 立法에 의하여 얼마든지 認定할 수 있다는 理論도 問題일 뿐 아니라, 이러한 理論에다가 위 刑法 第17條 및 第60條를 類推制度와 더불어 잘 活用하기만 하면, 적어도 이른바 「反國家的 犯罪」에 관한 한 解釋上의 原則이라고 하는 刑罰不遯及의 原則은 오히려 例外로 되고 刑罰은 原則적으로 遯及하는 結果를 招來할 可能性이 많다고 하겠다.

3. 國家的 法益 및 經濟的 利益에 대한 지나친 保護

北韓刑法은 다른 種類의 犯罪에 比하여 國家主權敵對, 國家管理 및 國家所有 侵害에 관한 罪, 經濟的 犯罪에 관하여 매우 包括的인 規定을 둘 뿐 아니라, 보다 더 重한 刑罰로 다루고 있는 點 및 刑法典 全體 體系안에서 이 種類의 犯罪들이 차지하는 位置나 그 犯罪들을 表象하기 위하여 使用된 用語들에 비추어 볼 때에,北韓刑法은 그 무엇보다도 國家의 政治制度 및 經濟的 利益의 保護에 最高의 優先順位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韓國的 法の 傳統과 中國文化의 影響

北韓刑法이 소련刑法에서 影響을 입은 것이 라는데에 관해서는 前述한 바와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北韓刑法에는 韓國在來의 法的 傳統을 化體하고 있는 部分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곧北韓刑法이 그 一部分에 있어서나마 窮極的으로는 中國文化안에서의 所產이라는 것을 意味한다. 註(69)

예컨대, 尊屬殺人이나 尊屬傷害를 普通 殺人이나 普通傷害보다 加重 處罰하는 北韓刑法上的 諸規定 (北韓刑法 § 121, 125) 이나, 탐욕, 질투 기타 비열한 動機에서 저지르는 殺人을 보통 殺人보다 무겁게 罰하는 規定 (北韓刑法 § 112 ①) 등은 孝為主, 重義輕利하는 在來 韓國의 法的 傳統 내지는 中國의 儒敎思想에서 쉽사리 理解될 수 있는 規定들인 것이다.

Ⅲ. 犯罪論

1. 犯罪의 概念

犯罪의 概念에 關係 北韓刑法은 第7條에서, 「罪라 함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및 그에 樹立된 法律秩序를 侵害할 社會的 危險性이 있는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한 일체의 可罰的 行爲」라고 定義하고 있다.

한편, 北韓의 한 刑法學者는 「犯罪은 支配階級에 대하여 危險한 行爲이며, 단순히 個別的 사람에 대한 난폭한 行爲, 과도한 行爲가 아니라, 主權을 掌握한 一定한 階級의 利益을 反對하여 指向하는 意識的, 無意識的 行爲」라고 하고 있다. 註(70)

上述한 兩概念 모두, 犯罪을 단순히 「構成要件에 해당하는 違法, 有責한 行爲라고 形式的으로 定義하는 것이 아니라, 實質的으로 소위 「社會主義 法秩序에 의하여 社會的으로 危險한 行爲」라고 定義함으로써 犯罪의 階級的 內容을 公公연하게 提示하는 점이 犯罪 概念의 特徵을 이룬다고 하겠다.

2. 犯罪構成要件論

오늘날 西獨이나 日本,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通說的 見解에 의하면, 犯罪의 成立与否는 構成要件該當性, 違法性, 有責性이라고 하는 三重의 評價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그러나,北韓에 있어서는 犯罪의 成立与否는 다만 構成要件該当性이라고 하는 判断에서만 행하여 진다. 따라서,北韓에 있어서 構成要件이라는 것은 法規가 문제된 行爲를 犯罪로서 特徵지워 주는 前提條件의 總體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諸條件을 ① 犯罪의 客体 ② 犯罪의 客觀的 側面 ③ 犯罪의 主体 ④ 犯罪의 主觀的 側面이라는 4個의 要素를 特徵지워 주는 徵表로 分類하여 考察하고 있다.

3. 行爲의 社会的 危險性を 排除하는 事由

韓國刑法은 違法性阻却事由로서 ① 正当行爲(§ 20) ② 正当防衛(§ 21) ③ 緊急避難(§ 22) ④ 自救行爲(§ 23) ⑤ 被害者의 承諾(§ 24)의 다섯가지를 明文으로 規定하고 있음에 대하여,北韓刑法에 있어서는 衛法性阻却事由라고 부르는 대신 行爲의 社会的 危險性を 排除하는 事由라고 하여,刑法上 直接 規定하고 있는 것으로는 正当防衛(北韓刑法§ 15)와 緊急避難(同法§ 16)의 兩者만이 있고 그 以外에 學說上 理論에 의하여 認定되는 것으로서,被害者의 承諾,社会的으로 有益한 職業的 機能의 遂行,義務的 命令의 執行,自己權利의 行使등이 있다. 註(71)

그런데,韓國刑法과는 달리 이른바 過剩避難,誤想避難등의 直接的 規定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이 그 特色이라고 하겠다.

4. 故意的 犯罪의 進展段階

韓國刑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北韓刑法學에 있어서도 故意的 犯罪活動은 ① 故意的 表明 ② 犯罪의 予備 ③ 未遂 ④ 既遂의 段階를 통과하여 現實化한다고 한다. 다만 北韓刑法學에 있어서는 犯罪의 既遂 以前의 犯罪活動段階를 「予先的 犯罪活動」이라고 부르고註(72), 「陰謀」라는 概念을 實定刑法에 採入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韓國刑法學과는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또한 犯罪의 予備 및 未遂는 既遂와 同一한 條項에 의하여 處斷한다고 北韓刑法은 規定하고 있는데(同法 § 20 ①), 이에 따라, 北韓刑法에 있어서는 그 各則에서 特別히 未遂 및 予備를 處罰한다는 規定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故意的) 犯罪의 予備와 未遂를 處罰할 수 있게되어 있다.註(73)

5. 共犯論

北韓刑法上 犯罪實行에 直接 參加한 者를 正犯者라고 하며註(74), 이와 같은 正犯者에 教唆犯과 幫助犯의 兩者를 합하여 狹義의 共犯이라고 稱한다.

이와 같은 共犯에 대한 그 具體的 刑罰量定에 있어서는 그 犯罪에 加担한 정도와 各자의 社會的 危險性의 정도를 參酌하도록 되어 있으나, 正犯者, 教唆者 및 幫助者는 同一한 條項에 의하여 處罰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지어는 幫助者도 正犯者보다 重하게

処罰될 수 있어 幫助犯에 대한 刑罰의 必要的 減輕을 規定한 韓國刑法(同法 § 32)과는 그 態度가 相異하다.

IV. 刑罰論

1. 刑罰의 目的

北韓裁判所 構成法 第3條는 「裁判所는 刑罰을 適用함에 있어서 犯罪者를 다만 處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教化하며 再教育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刑法 第27條는 刑罰의 目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첫째로, 罪를 犯한 者로 하여금 새로운 罪를 犯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둘째로, 犯罪의 一般的 予防를 위하여, 셋째로, 罪를 犯한 者로 하여금 「人民民主主義 國家의 自由로운 共同生活」의 條件에 適應하기 위하여, 刑罰의 適用은 肉體的 苦痛을 주거나 人間的 品位를 저하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지 않으며 報復과 懲罰을 自体課業으로 삼지 않는다.

위 두 規定을 外形적으로 보면, 北韓에 있어서의 刑罰은 應報, 一般豫防, 特別豫防의 多元的 目的을 가진 것으로 불런지도 모르나, 레닌의 이른바 強制(진압, 懲罰)와 教養의 理論과 결부시켜 보면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2. 刑罰의 種類

北韓 刑法總則이 規定하는 刑罰의 種類에는 다음의 일곱 가지가 있다.

즉 死刑, 懲役, 教化勞動, 罰金, 일정한 權利的 剝奪, 일정한 職業 또는 營業의 禁止, 一部 또는 全部의 財産沒收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刑罰以外에 北韓刑法 第70條에는 「遠隔地에의 追放」이란 刑罰이 있는데, 이는 外國으로 脱走하는 軍務者의 家族을 処罰키 위한 것이다.

3. 刑罰의 具体化 過程에 대한 制度

北韓刑法은 刑罰의 具体化 過程에 대한 制度로써 宣告猶予制度는 없고, 執行猶予, 滿期前 釈放, 前科의 消滅등을 規定하고 있다. 註(75)

V. 刑法各則上의 諸犯罪

1. 國家的 犯罪(北韓刑法 第13, 14, 15章)

北韓 刑法上 나타나고 있는 國家에 대한 犯罪에는 첫째, 國家主權 敵對에 관한 罪(同法 § 64 ~ 81), 둘째, 國家管理 侵害에 관한 罪(同法 § 82 ~ § 102), 셋째, 國家所有社會 및 協同團體所有 侵害에 관한 罪(同法 § 103 ~ § 111)로 大別될 수 있다.

國家主權 敵對에 관한 罪의 保護法益은 北韓의 「國家主權」 즉, 北韓 그 自體의 政治·經濟制度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北韓의 統治制度로 要約될 수 있다.

國家管理 侵害에 관한 罪는 公安侵害의 罪, 通貨와 信用制度侵害의 罪, 交通의 安全을 侵害하는 罪, 北韓의 國家防衛를 侵害하는 罪등을 말한다.

國家所有 侵害에 관한 罪는, 公民의 所有(個人的 私所有)가 아닌, 이른바 社會主義的 所有(國家·社會 및 協同團體의 所有)를 侵害하는 犯罪이다.

2. 人身侵害에 관한 罪(同法第 16 章)

人身侵害에 관한 罪는, ① 生命을 侵害하는 罪 ② 健康을 侵害하는 罪 ③ 生命·健康에 危險을 주는 其他의 犯罪 ④ 人身의 自由를 侵害하는 犯罪 ⑤ 性的 犯罪 ⑥ 名譽를 侵害하는 犯罪의 여섯가지로 되어있다. 註(76)

3. 公民의 財産侵害에 관한 罪(同法第 17 章)

公民의 財産(즉, 個人的 私所有) 侵害에 관한 罪는 竊盜, 略盜, 強盜, 恐喝, 詐欺, 高利所得, 橫領, 個人財産破損, 著作權侵害 및 商號·商標無斷利用 등에 관한 罪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公民의 財産에 대한 犯罪는 國家·社會 및

協同團體所有에 대한 犯罪보다도 刑罰이 輕한 것이 北韓刑法의 特色이다. 註(77)

4. 勞動法令 違反에 대한 罪 (同法第18章)

勞動法令 違反에 관한 罪는 ① 勞動保護를 侵害하는 犯罪 ② 勞動規律을 侵害하는 犯罪 ③ 團體契約 또는 賃金協定 및 職業同盟 活動을 侵害하는 犯罪의 세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北韓은 1978年 4月18日 소위 「社會主義勞動法」을 採択하고서 이를 大的으로 宣傳하고 있으나, 現實과 法規範圍에는 많은 乖離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5. 公務上 犯罪 (同法第19章)

北韓 刑法上 公務員이라 함은, 「國家 또는 協同團體의 機關, 企業所 및 法令에 의하여 一定한 義務와 또는 其他 一般 國家的 課業을 實現할 權利와 權限을 부여받은 職業同盟 其他의 團體에 恒時的 또는 一時的으로 勤務하는 者」를 말한다. (同法 § 178)

公務上 犯罪에는, 職務怠慢罪, 職權濫用罪, 越權行爲罪, 職務不執行罪, 國家管理 및 經濟紊亂罪, 權威毀損罪, 不當判決罪, 不法拘束 및 陳述強要罪, 郵便物 橫領罪 및 紛失罪, 職務上 文書 偽造罪, 秘密公表罪, 秘密文書紛失罪, 收賂罪 등이 있다.

6. 經濟에 관한 罪 (同法第 20 章)

經濟에 관한 罪는, 北韓이 취하고 있는 經濟路線 즉, 私有財產 制度의 禁止, 營利活動의 禁止, 國家經濟計劃體制의 遂行등을 위해 規定한 罪이다.

여기에는, 國家財產浪費罪, 契約不履行罪, 勞動忌避罪, 土地売買 등의 罪, 釀造罪, 不法物資売買罪, 脫稅罪, 財產隱匿罪 등이 있다.

7. 管理秩序侵害에 관한 罪 (同法第 21 章)

北韓 刑法上的 管理秩序의 概念속에는 行政秩序的 性格을 띤 것 뿐만 아니라 行動秩序 및 精神秩序的 性格을 띤 것까지 多様な 것이 包含되어 있다. 管理秩序侵害에 대한 罪으로써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① 行政秩序 違反에 대한 罪(文書偽造, 虛偽申告, 挑走, 偽証 등) ② 行動秩序 違反에 대한 罪(파렴치한 行爲, 未成年者 犯罪, 教唆, 賭博, 強制婚姻, 蓄妾 등) ③ 精神秩序 違反에 대한 罪(遺失문서 刊行, 宗教團體에의 기부強要 등)가 있다.

8. 社会的 安全 및 人民保健侵害에 관한 罪 (同法第 22 章)

여기에는 ① 不法 毒·劇物 製造 등에 관한 罪 ② 無免許 医療行爲 罪 ③ 傳染病에 대한 規則違反罪 ④ 公共物品 形態性質 變更罪 ⑤ 爆発物不法 製造保管 등의 罪가 있다. 이들 犯罪 가운데서 ②

③의 罪는 法定刑이 「教化勞動 또는 罰金」임에 反하여 그 나머지 犯罪들에 대한 法定刑은 모두 徵役刑 아니면 教化勞動刑이다.

9. 軍事上 犯罪 (同法第 23 章)

北韓刑法은 「軍刑法典」을 따로 두지 않고 그들의 「刑法典」 안에서 直接 軍事上 犯罪을 規定하고 있다. 이는 蘇聯 刑法에서 影響을 입은 것 같다. 註(78)

北韓刑法上 軍事上 犯罪라 함은, 소위 朝鮮人民軍隊軍務者가 소정의 軍務執行秩序를 侵害하는 罪를 말하는 바, 軍務上 命令不執行罪, 上官모욕죄, 脫走罪, 身體自傷罪, 衛兵勤務違反罪, 武器使用拒否罪, 住民財產損壞罪 등이 있다.

第 7 節 民事訴訟法

I. 基本原則

民事訴訟法에 관해서도 統一法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958 年の 內閣決定에 좇아 그 草案의 準備가 進行되었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고, 不文律의 形式을 빌어 法을 施行하고 있다. 원래 訴訟法은 實體法에 비하여 한결 더 技術的인 것이므로 民法이나 刑法등에 비하여, 한결 더 많은 蘇聯의 立法技術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한 뜻에서 民事訴訟法體系는 蘇聯法의 그것과 大差

없는 것이 되고 있다.

民事訴訟법은 적어도 體系上으로는 訴訟節次와 執行節次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러 裁判節次도 規制하며, 또 訴訟段階도 ① 訴訟의 提起 ② 公判前事件準備 ③ 一審公判審理 ④ 二審訴訟審理 ⑤ 非常上訴審理 ⑥ 再審 ⑦ 判決의 執行이라는 일곱으로 이루어진다.

民事訴訟법은, 우선 裁判所의 管理 및 構成과 裁判所의 構成員의 排除에 관한 것들을 規制하는데, 이것은 憲法 또는 裁判所構成法의 內容과 어느 점에 있어서는 重複을 이룬다.

訴訟關係當事者, 第三者의 訴訟參加, 訴訟代理, 民事訴訟에서의 檢事의 參加에 관한 것들이, 各各 具體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중 檢事の 參加는 처음에는 인정되지 아니했던 것을^{註(79)},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檢事の 役割 및 訴訟上の 地位를 考慮하여, 일찍 부터 인정하게 된 점이 커다란 特徵이라 하겠다. 또 그들은 訴訟當事者로서의 共同訴訟人制度和 訴訟의 併合과 分離制度도 活用하고 있다.

証人の 陳述, 証拠文書, 証拠物 및 現場檢証, 証拠의 保障等 証拠制度에 관한 規範들은 各級審마다 具體적으로 檢討하고, 또 當事者의 陳述 및 承認, 証拠의 許容性, 証拠評價 및 証拠審理節次에 관한 것들이 基本的으로 다루어진다.

II. 訴訟節次

裁判所に 事件이 提起되어 判決이 내려질 때 까지의 모든 節

次に 關於 問題이다. 이 問題는 訴訟提起, 反訴, 公判審理, 判定 및 判決, 事件審理의 中止 및 事件의 棄却에 關於 것들을 包含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가지 뚜렷한 特徵이 있다. 첫째, 判定에 關於 것은 公判審理에 關於 諸規定과는 별도로 獨立을 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判定이 公判審理過程에서 進行되는 節次이기는 하지만, 北韓의 實務上 判決과 判定에 關於 規定에서 다루는 것이 더욱 合理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離婚節次에 關於 特別조치이다.

離婚節次에 關於 것을 民事訴訟法의 訴訟節次 속에 包含시키는 것은 社會主義法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態度이어서 별 生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만 이 節次를 特別節次에 의하게 할 것인가 또는 一審節次에 의하게 하느냐에 關於하는 論議가 있다. 이에 關於하여 北韓法의 態度는, 離婚節次 역시 民事에 關於한 一般節次이기 때문에, 特別節次로 다루는 것은 不合理的하다고 하고 있다.

Ⅲ. 各級人民會議代議員選舉者 名簿에 關於 異議申請事件

이 事件은 民事上의 法律關係를 바로잡는 것이기 보다 選舉者 名簿 作成에 關於한 人民委員會의 行爲의 妥当与否를 審議하는 일이다. 따라서 自由諸國의 法體系에서 볼 때, 이것은 公法上의 關係이고 民事法이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그러나 行政統制의 機能이 公法에는 勿論 民事法의 分野에 까지 當然히 미치고, 또

行政救濟 내지는 行政争訟에의 길을 保障해주고 있는 法部分이 막혀 있는 北韓에서는, 위와 같은 便法은 부득이 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請求는 당해사건이 갖는 政治的意義를 감안해서 民事訴訟法上 特別節次로 獨立시켜 規定하는 것 같다.

IV. 特別節次

一般訴訟節次와 本質적으로 區別되는 特徵을 갖는 節次를 말한다. 「滯納金 및 行政罰金에 관한 裁判節次, 山林規定違反에 관한 裁判節次, 公証人의 行爲에 대한 異議申請事件에 관한 裁判節次, 所在不明者 및 死亡者宣告, 公民들의 身分上 또는 財産上 權利의 發生, 變更, 消滅과 關聯된 事實들의 裁判上 確認, 분실한 証券에 대한 權利의 回復」 등이 여기에 속한다. 註(80)

特別節次를 民事訴訟法上 어떻게 規定지어야 하느냐에 관하여는, 지금껏 北韓에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누어져 왔다. 첫째의 생각은, 特別節次라는 이름을 非訟節次라 고치자고 한다. 왜냐하면, 特別節次에 속하는 事件들은 訴訟的의 性格을 띠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둘째의 생각은, 特別節次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이냐 하더라도 不利益을 받는 公民과 國家機關 사이에는 서로 正當性을 다투는 紛爭이 存在한다는 것등을 理由로 그 訴訟性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세번째의 생각은, 行政機關의 行爲에 대한 異議申請에 관한 裁判節次와

法律的異議를 가지는 사실들의 確認에 관한 裁判節次(순수한 非訟事件이 여기에 속한다)의 두가지 部類로 區別을 하자는 것이다.

위와 같이 特別節次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異見이 제기되어 있어, 결국 이의 解決은 民事訴訟法典의 判定에 맡겨져야 할 問題이다.

V. 二審裁判所

裁判所の 判決에 대한 上訴, 異議 및 判定에 대한 抗告, 異議의 節次와 그의 審理는 二審裁判所가 맡는다.

이 問題中 가장 중요한 것은, 二審裁判所の 權限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하는데 있다. 즉 二審裁判所가 一審裁判所の 判決을 變更하는 경우, 二審에 訴訟關係者를 넓게 參加시키며 또 証人의 尋問, 鑑定의 實施, 必要한 証拠의 조사 및 評價에 대한 活動을 할수 있는가 하는 問題이다. 이에 대한 北韓의 支配的意見은, 「이렇게 二審의 權限을 擴大하는 일은, 一審과 二審의 限界를 모호하게 해주며 또 一審을 反復하게 하는 結果가 되어 不當하다고 한다. 註(81)」

VI. 非常上訴와 再審

이 段階에 있어서도, 北韓의 一部意見은 非常上訴審理에 당사자들을 參加시키는 것이 가장 合目的이라고 주장한다.

第 8 節 刑事訴訟法

I. 北韓刑事訴訟法의 特性

1. 現實과 規範의 乖離

北韓은 1950年3月3日에 刑法의 制定과 同時에 刑事訴訟法을 制定하였으나(22章, 264條), 刑法의 경우와 같이 法規範과 現實의 運用實態와는 엄청난 乖離가 있다.

이러한 現狀은, 刑法이나 刑訴法條文에 단 한 字도 나타나지 않은, 党이나 特殊機關(社會安全部等)이 犯罪処罰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이러한 法外現狀을 「事件의 正確한 解決을 保障하는 技術」처럼 열렬히 歡迎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에서의 犯罪處理의 實狀을 把握하는데 있어서는, 外形上的 法條文보다는 그 裏面狀을 보는 것이 重要하다.

2. 犯罪処罰節次의 亂脈相

自由民主國家에서는 犯罪를 処罰할 때에는 刑事訴訟法이 定한 節次에 따라, 事件의 性格에 의해 差別을 두지 없이, 處理토록 되어 있으나 北韓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北韓에서는 搜查機關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예컨대, 分駐所, 安全部, 檢察所,

国家政治保衛部등), 刑罰을 과하는데 關与하는 機關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裁判所, 党, 裁判現場에서의 人民大衆等).

따라서, 北韓은 犯罪処罰에 있어서 一貫성과 平等성이 欠如되는 亂脈相을 自体에 內包하고 있다.

II. 犯罪의 形態 및 處理機關

北韓에서는 犯罪의 形態에 따라서 그 取扱機關 및 處理節次가 다르다.

1. 政治犯罪: 政治犯罪란 反党, 反革命陰謀者, 金日成모독 및 中傷 謀略者, 金日成族譜誹謗者, 金日成鬭爭歷史歪曲者, 金日成에 관한 各種 出版物 및 肖像面破損者, 党政策 및 金日成教示誹謗者, 間諜行爲者를 말하며, 政治犯은 一般檢察所나 裁判所가 아니라, 国家政治保衛部가 取扱한다.

政治犯의 処罰은, 宗派分子는 死刑 또는 終身刑, 金日成모독자는 10~20年刑(경우에 따라 死刑), 金日成教示 및 党政策誹謗者는 10~20年刑, 間諜 및 破壞行爲者는 死刑 또는 10~20年刑이다.

2. 一般犯罪: 一般犯罪란 政治犯 以外的 經濟犯, 暴力犯등을 말한다. 一般犯罪의 処罰은 分駐所, 市郡安全部, 檢察所, 裁判所등에서 取扱한다. 分駐所에서는 一般犯罪者를 拘束 措置하고, 犯罪事實의 審問 및 調書를 作成 市郡安全部に 提出하고, 輕犯者에 대한 教養事業을 하고 犯罪者 護送業務를 担当하고 犯罪發生時 現場保存 및 警備業務를 担当한다.

市郡安全部에서는 犯罪者拘留 및 調查業務, 輕犯者의 檢察機關移牒 등을 担当한다. 檢察所에서는 安全部에서 調查處理된 犯罪者調書의 檢討確認 및 犯罪者에 대한 再審問後 裁判所로 移管措置하는 것을

담당한다.

裁判所에서는 檢察所에서 移牒된 調書を 토대로 黨委員會에서 討議決定된 内容에 따라 裁判을 實施한다.

Ⅲ. 裁判의 種類와 그 節次

1. 人民裁判

人民裁判은 6.25 當時 全人民의 뜻과 意思에 따라 裁判한다는 口實아래 現地(法廷外)에서 即決公開裁判을 하는 것으로 通用되고 있었으나, 近來에 들어와서는 뜻이 바뀌어서, 節次를 거쳐 司法機關에서 裁判을 實施하는 것을 말한다.

人民裁判은 裁判對象의 性格에 따라 政治裁判·刑事裁判·民事裁判으로 区分된다. 政治裁判의 경우에는 正常的인 裁判節次를 省略하고 政治保衛部 및 黨組織에서 直接 處理한다.

2. 群衆裁判

이것은 人民大衆에게 경각심을 두기 위하여 地域裁判所要員(判事·辯護士·書記)이 現場의 郡級單位에 出張, 公開裁判을 實施하는 一種의 法廷外 移動裁判이다.

3. 群衆審判

이것은 群衆裁判과 類似한 法廷外의 移動裁判이나 주로 道·市級에서 開催되며 極刑에 処할 被告를 大衆앞에 내세워 大衆으로 하여금 적개심을 가지고 極刑을 要求하도록 대중결기를 유도하는 裁判이다.

4. 同志裁判

이것은 軍隊나 職場內에서 일어난 輕微한 事件으로서 安全 및 司法機關에서 法的으로 處理할 것까지는 못되는 경우에 該當職場組織 및 黨細胞에서 處理토록 하는 일종의 懲戒會議와 類似한 形態이다.

第9節 國際法

I. 外交活動의 現況

북한 외교정책의 基調는 자기들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한국의 孤立化를 초래하고 이로써 통일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다져 나가려는데 있는것 같다. 이를 위해 그들은 정치·경제·문화의 여러면에서 공세를 펴고 있으나 아직은 우리에게 비해 落後되고 활동범위도 共產圈 및 第3世界에 국한되고 있다. 自由世界와의 접촉도 모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몇몇 民間協定을 체결한데 불과하며 광범한 교섭은 尙今 日暮途遠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7년 1월 1일에서 12월 5일까지 그들은 유고슬라비아, 버마, 가봉 10개국의 首腦級을 비롯한 총 98개국으로 부터 326개의 각종 대표단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朴成哲·林春秋 등 그들의 高位層을 포함한 총 200개 대표단을 延243회에 걸쳐 80개국에 파견한 바 있다. 이것은 모두 1976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進一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초청의 경우 93개 대표단이 증가된 것은 1977년 9월 평양에서 있는 이른바 主體思想國際討論會에 참가키 위해 73개국으로 부터 89개 대표단이 한꺼번에 북한을 방문한 때문이었다.

1977年度 외교활동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들이 訪問外交

중심으로 부터 招請外交로 전환했다는 사실이며, 이를 지역적으로 볼 때 중공 및 소련을 비롯한 共產圈과의 교류가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中東 및 아프리카 지역이 2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전체 초청 및 방문 가운데서 非同盟圈과의 교류가 56%에 이르고 있어 非同盟圈에 대한 외교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분야별로 보면 정치적인 來往이 42%, 문화 및 체육이 41%, 경제가 15% 그리고 군사부분이 2%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非同盟圈과는 정치관계가 전체 정치교류의 58% 그리고 共產圈과는 경제대표단의 교류가 20%로서 主軸을 이루고 있다(註82)

그들의 이와 같은 交流趨勢는 제 31차 UN총회 이후 한국문제의 脫UN化 경향에 따라 非同盟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들을 국제적 支持勢力으로 계속 확보하는 한 편, 중·소를 비롯한 共產圈과의 외교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共產圈 내에서의 韓半島 現狀認定 경향을 견제하면서 중·소로 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더 얻어 내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들은 1977년 12월 5일 현재 95개국과 수교하고 있으며 UN에는 옵서버를 보내고 있다. 그들은 또한 UN通商開發機構(UNCTAD), 世界保健機構(WHO), 萬國郵便聯合(UPU), 世界知的產業機構(WIPO), UN教育科學文化機構(UNESCO), 世界氣象機構(WMO), 國際電氣通信聯合(ITU), 國際民間航空機構(ICAO), UN食糧農業機構(FAO), 아시아 아프리카法律諮問委員會(AALCC), 國際法定計量機構

(IOLM) 및 國際原子力機構 (IAEA)에 가입하고 있다.

1978년에 들어 와서도 그들은 외교에 안간 힘을 쓰고 있음이 역역히 엿보인다. 8월 중 평양을 방문한 외국의 정부대표단 또는 민간대표단으로는 나이지리어協同部門 대표단, 중공 國防副相 粟裕, 世界聯盟 아프리카担当部長 카시멘·그바리기, 폴란드政府 民營航空總局長 M·로만, 아흐메드·압둘가니를 단장으로 하는 이집트教育代表團, 핀랜드의 對북한 親善 및 連帶性 대표단, 일본 長崎縣友好親善 대표단 등이 있다. 같은 달 그들의 中央通信社長 金成傑은 인도를 방문했으며 김풍진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대표단이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등을 방문하고 있다.

8월 11일에는 압벨·살렘·잘루드首相을 단장으로 한 리비아 정부대표단이 북한을 공식 방문, 4일간 체류하면서 金日成을 비롯한 북한 高位官僚들과 정치·외교·경제 분야의 협동에 관한 일련의 회합을 가진 바 있는데, 잘루드首相과 朴成哲 간의 회담 그리고 트 레이치시外相과 허담 간의 회합은 双方共同委員會 1차합의 의정서와 變化協調協定을 남고 있다. 1978년 1월 우리와 領事關係를 맺었던 리비아는 그에 앞선 1977년 5월 북한에 1億달러의 現金借款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의 대표단 파견은 3900만달러 상당의 道路建設 및 農地開墾事業에 관한 비용을 교섭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註 83)

이번 리비아 정부대표단의 평양 방문은 가이아나, 中央阿, 南예멘, 세이셸, 모잠비크 콩고, 루안다에 이어 금년 들어 8번째로 북한

의 초청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그들은 모두 非同盟 그룹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이 밖에 금년 8월 新任 루마니아 大使 P. 마리네스쿠가 金日成에게 新任狀을 提呈한 바 있다. 그들은 스포츠를 통한 민간외교에도 나서고 있으며 간혹 汎世界的 경기에도 출전하고 있다. 최근의 일로는 1978年 8월 5일부터 12일까지 헝가리首都 부다페스트에서 있는 東歐공산국가 10개국이 참가한 사회주의국가 無線電信競技大會에서 출전한 것이 그 보기이다.^{註84)}

II. 對外條約 關係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북한의 外交活動은 필연적으로 조약의 체결을 수반한다. 그리하여 1978년 6월 16일에는 모스크바에서 소련·북한 간에 1978年度 商品流通에 관한 議定書의 조인을 보고 있다. 이것은 1976년 2월 9일 그들 사이에 체결되었던 1976~1980년간 長期貿易協定에 의거한 1978년도 商品流通에 관한 합의로서 모스크바 방송이 정한 바에 의하면 1978년도의 쌍방 교역량은 전년도에 비해 증대될 것이라고 한다.^{註85)}

한 편 1978년 6월 12일에는 북피·소련사이에 漁業協力에 관한 議定書가 평양에서 북한 水産部 副部長 김성호와 소련 漁業副相 아인글러 체코 사이에 조인되었다. 그들 사이의 漁業協力は 1967년 3월 1일 소련이 200해리 漁業專管水域을 설정하고 나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漁獲量 및 漁船團의 규모에 상당한 規制를 가하고 있다.

1977년의 경우 소련 수역내에 북한이 漁獲할 수 있는 량은 20 만톤이었으며(註 86) 이번에 조인된 議定書에서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註 87) 그런데 북한은 제 2 차 7 個年 計劃中 수산물 생산량을 350 만톤이나 책정하고 있어 그들의 목표달성에는 상당한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沿近海 漁業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들은 결국 오오쓰크海 등 北洋의 소련 수역으로 진출할 수 밖에 없는데 소련이 상당한 바와 같이 漁獲割當量을 規制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割當量의 증가와 漁撈上의 협조를 위해 지속적인 対소 교섭을 벌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6월 9일 평양에서 이란과 6월 19일에는 말라가슈의 首都 안띠나·나리브에서 말라가슈와 각각 通信協定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의 通信協定은 양측 官營通信社 간에 체결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通信記者의 상호 교환 및 常駐, 전통문화 및 慶祝日 등의 특별 프로그램의 제작·교환 그리고 기타 보도교환에 관한 협조강화를 위한 것이 아닌가 관측되고 있다(註 88) 이로써 북한은 中東지역에서 16 개국, 아프리카지역에선 12 개국과 放送 및 通信에 관한 協定을 체결한 것으로 된다. 다른 한 편 6월 6일에는 북한 對外文化連結委員會 副委員長

오문환과 駐평양 몽고大使 바담다링발도 사이에 1978 ~ 79 年度 文化交流計劃書가 평양에서 조인된 바 있다. 이들 쌍방은 1948 年 10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 對内外 정책을 지지해 왔으며 상기 계획서는 1956 年 5월에 체결한 交化協定에 따라 매년 새로이 합의하는 것이다.

1978 年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일본의 自民黨 소속 衆議院 의원이며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 회장인 久野忠治와 日朝漁業協議會 회장인 吉井一良는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한측 對外文化連絡委員會 副委員長 玄竣極 및 東海水產協同組合聯盟 대표 김철수와 어업회담을 갖고 1977 年 9월 5일 체결한 바 있는 쌍방의 어업에 관한 暫定合意書의 유효기간을 앞으로 2년간 연장할 것과 일본어업수역 안에서 북피가 漁撈作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合意書에 조인했다.

이것은 1977 年の 漁業에 관한 暫定合意書가 1978 年 6월 30일 로써 그 효력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 이에 앞서 1978 年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의 6일 동안에는 일본 社會黨위원장 아스카다(飛鳥田一雄)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社會黨訪北 대표단이 북한 黨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한 바 있었다.註 89)

이번에 합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友好親善과 互惠平等 및 상호성의 원칙에 입각한 어업협력강화, 둘째 태평양 쪽을 제외한 일본의 漁業水域 안에서의 북한의 漁撈活動 보

장, 세제, 어업의 종류 및 규모는 쌍방이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는 것(入漁料는 없음), 네째 상대측 漁船航行의 안전보장과 海難事故 및 災害時 긴급구조와 피난 편의의 제공, 다섯째 쌍방간 수산자원의 보호 및 과학기술의 협력강화, 여섯째 1977년 9월 5일에 체결된 日朝漁業協力에 관한 協定會意書의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한다는 것이 그것이다(註 90).

그런데 이번 합의서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태평양 쪽을 제외한 일본 어업수역 안에서 북한이 漁撈作業을 할 수 있도록 入漁權을 明文化시킨 점인데 이것은 북한이 互惠主義의 원칙을 들고 나와 入漁權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그들의 이른바 경제적 主體性이라는 名分을 부각시키려는 底意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까지 북한이 일본의 200해리 어업수역 내에서 操業한 実績이 거의 없었던 실정을 勘案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경제적 實利 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일본 정부당국의 보증을 얻어내려는 정치적 포석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들은 지금까지 政府保證 民間漁業協定の 체결을 일본측에 대해 끈질기게 요구해 왔는데 이에 대하여 福田赳夫 일본首相은 국교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교섭은 곤란하나 일본·북한 간 懸案問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언명한 바 있다. 그리고 1978년 9월 20일 일본外相 園田 直는 自國 국회에서 북한과의 경제·무역·문화 및 人的 交流擴大를 통한 상호 理解增進을 韓半

島 정책의 근간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對日 민간어업협력을 활발히 전개하여 상호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과의 어업분쟁을 야기시켜 어떤 형태로든지 일본 정부가 개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쌍방간의 관계를 정치적 차원으로 이끌려 할 것으로 예측된다.

Ⅲ. 그들은 國際法를 인정하는가?

북한은 1961年 7월 6일에 체결된 소련과의 友好·協調 및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에서 「UN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하여」 極東과 全世界에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강화를 촉진시킬 것을 希望하면서(前文) 「締約雙方은 平等과 國家主權의 相互尊重·領土完整·互相 內政不干涉의 原則들에 立脚하여 親善과 협조의 정신에서」 서로의 경제적 문화적 協力을 實現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고(제 4 조) 1961年 7月11일에 締結된 중공과의 友好·協調 및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에서는 「締約雙方은 主權에 대한 相互尊重, 內政에 대한 相互不干涉, 平等과 互惠의 원칙 및 친선·협조의 정신에 계속 입각하여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서 상호 가능한 한 모든 경제적 기술적 원료를 계속 공급하고 하여 발전시킨다」고 謳歌하고 있다(제 5 조). 이로써 그들은 UN을 인정하며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UN에 대해서는 그들은 加入申請을 낸 바도 있으며 한국

문제가 토의될 때 대표단을 파견하여 연설을 한 바도 있다.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되어 같은 날 發効한 韓國軍事停戰協定은 UN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副司令官」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협정이었는데 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그들은 UN군의 존재마저도 인정한 것이 된다.

그들은 동 협정에 의거한 軍事停戰委員會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에도 참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 협정에는 中立國監視委員會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및 中立國送還委員會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의 전체 위원과 기타 인원에 대해서는 자기의 職責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自由와 便利 (Freedom and Facilities)를 보장할 것이며 이러한 自由와 便利에는 「認可된 外交人員이 國際慣例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特權·待遇 및 免除權을 포함」 (including privileges, treatment, and immunities equivalent to those ordinarily enjoyed by accredited diplomatic Personnel under international usage)한다는 규정이 있다 (제 2 조 13 항 j) . 여기서 그들은 國際慣例의 準用에 합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78년 5월 21일 평양에서 모잠비끄 대통령 사모라·모이세스·마셀과 金日成사이에 조인된 親善 및 協調에 관한 條約에 의하면 「締約高位雙方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와 다른 나라들

과의 관계발전에서 < 국제적으로 공인된 > 다음의 원칙들에 기초한다]고 하고 있다(제2조).

첫째 「每個 나라 인민은 자기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며 그 어떤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받음이 없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결정할 확고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제2조1항). 이것은 自己決定權과 獨立權을 규정한 것이다. 둘째 「나라의 크기와 발전수준, 사회·경제제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每個 나라는 自然富源을 비롯한 모든 자원을 민족적 이익에 맞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제2조2항). 이것은 平等權과 天然의 富 및 資源에 대한 主權을 闡明한 것이다.

세째 「每個 나라는 국제문제를 특히 자기에게 관계되는 문제들을 심의하고 해결하는데 완전히 평등한 조건에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제2조3항). 이것은 主權平等의 원칙을 노래한 것이다. 네째 「每個 나라는 다른 나라의 自由權과 領土安定을 철저히 존중하며 평등과 상호존중·互惠·內政不干涉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제2조4항). 이것은 國內問題不干涉의 원칙을 謳歌한 것이다. 다섯째 「每個 나라는 다른 나라의 민족적 단결을 반대하거나 領土安定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企圖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인정한다」는 것(제2조5항) 이것은 領土保全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조항이다. 여섯째 「每個 나라는 자유의 권리를 가진다」(제2조6항). 이것은 自由권을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每個 나라는 UN헌장의 목적과

원칙,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과 규범들을 존중한다」(제 2 조 7 항). 이것은 UN 헌장 및 국제법의 존중에 관한 것이다.

1978년 7월 25 일에서 30 일까지 유고슬라비아의 首都 베오그라드에서는 非同盟全體外相會議가 열렸다. 총 87 개 회원국 가운데 말라위, 코모로가 불참하고 대신 20 개국의 읍서어버 및 7 개 초청국(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포르투갈, 루마니아, 필리핀)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 7월 25 일 북한 外交部長 허담이 代誦한 金日成의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불력不加担運動은 反帝·自主의 숭고한 이념을 俱現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정치세력으로서 歷史無台에 등장한 이래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민주적 해방과 自主權, 평화와 사회적 진보를 위한 新興勢力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推動하며 국제관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專橫을 가로막고 중대한 국제 문제들을 세계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는데 적극 參與하여 왔다」(註 91)

「우리는 무엇 보다는 每個 불력不加担運動의 화려한 전통과 특성을 확고히 수호하면서 自主性을 堅持하고 상호 內政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에서 광범한 統一戰線을 형성하며, 온갖 外來 支配勢力의 分裂·互解·爭奪策動을 물리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註 92)

「불력不加担 나라들은 진보적인 나라이니 非진보적인 나라이니

하는 것을 논하면서 편을 가르지 말아야 하며, 불력不加担 나라들 사이에 생긴 분쟁 문제는 当事者들이 자기의 민족적 이익과 불력不加担運動의 전반적 이익을 有機的으로 결합시켜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력不加担 나라들에 대한 그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과 지배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註 93) 「불력不加担 나라들은 단결하여야만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낡은 국제질서를 청산하며 착취와 약탈이 없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註 94)

그리고 7월 27일에 있는 북한 外交部長 허담의 基調演說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즉 非同盟國 간의 異見과 분쟁은 당사자들의 민족적 이익과 非同盟運動의 이익을 결합시키면서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朝鮮問題」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朝鮮의 內政」에 대한 外勢의 간섭을 종식시켜야 하며 「朝鮮休戰協定」을 평화협정으로 代替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註 95)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도 국제법적 用語를 쓰고 있으며 또한 국제법적 관념을 전개하고 있음을 본다. 그들은 침략·간섭을 반대하고 있으며 自主權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국제관계와 국제문화를 논하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提唱하고 있다. 특히 흥미있는 사실은 그들이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 협상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본 것 처럼 이에 대해 金日成은 「불력不加担 나라들 사이에 생긴 분쟁 문제는 当事者들이 자기의 민족적 이익과 불력不加担運動

의 전반적 이익을 有機的으로 결합시켜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허담도 非同盟國 간의 異見과 분쟁을 당사자들의 민족적 이익과 非同盟運動의 이익을 결합시키면서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IV. 國際法에 대한 態度

소련의 대표적 국제법학자 퉁킨 (G. I. Tunkin) 교수에 의하면 사회주의 諸國간의 관계에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諸原則이 적용되고^{註96)}, 相異한 사회제도를 갖는 국가들과의 사이에서는 平和共存의 원칙이 통용된다는 것이다^{註97)}. 그런데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란 사회주의 諸民族 간의 兄弟와 같은 우호의 강화를 겨냥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며^{註78)}, 平和共存이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移行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그 내용은 필연적으로 투쟁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註99)}.

우리는 위에서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를 고찰했는데 그들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노선을 그대로 踏襲하는데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은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따라서 광범한 條約網도 갖고 있으며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국제법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나 그들이 생각하는 국제법이란 二元的인 것이어서 共產國

과의 관계에서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諸原則으로 그리고 自由世界와의 관계에서는 투쟁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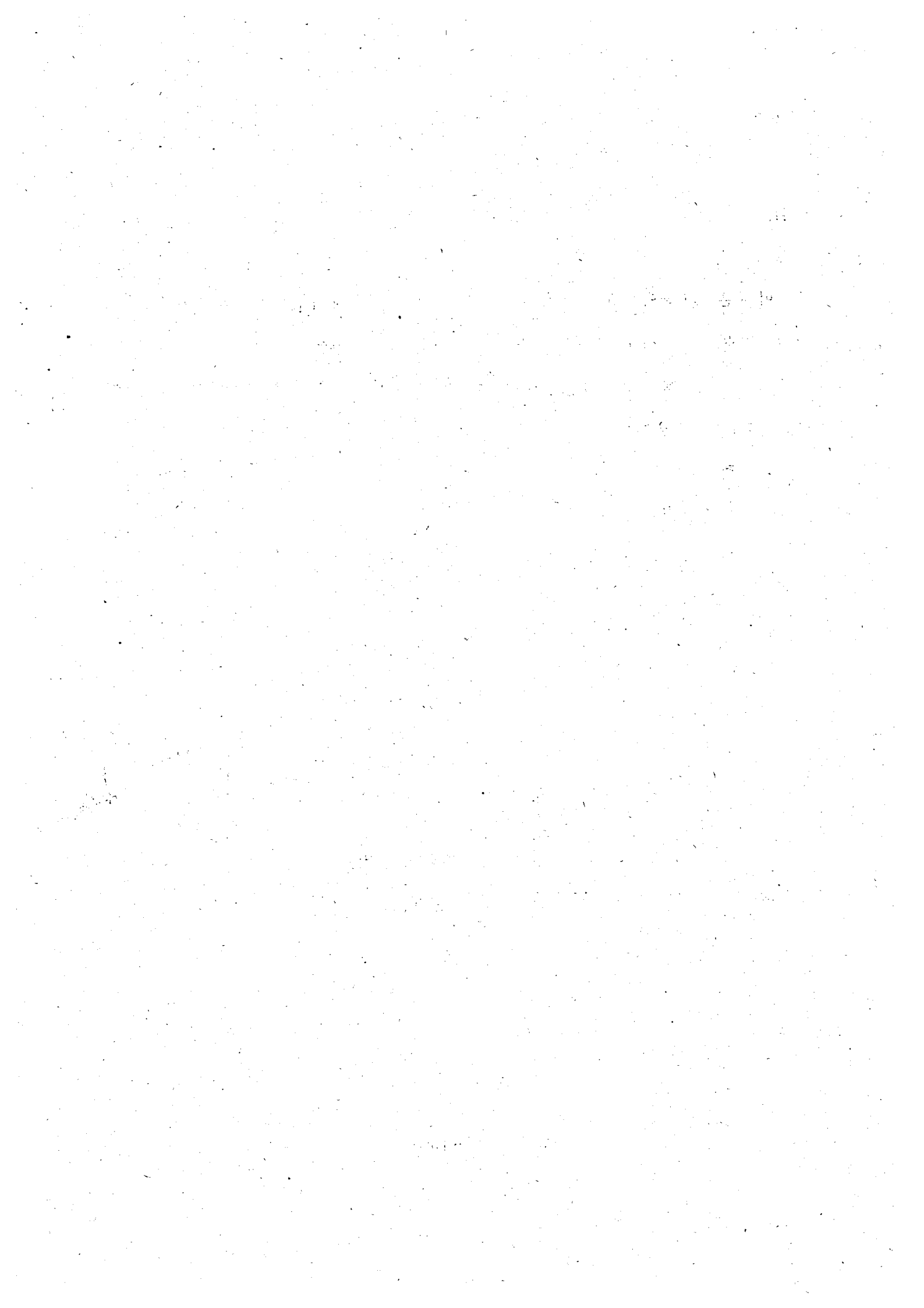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그들 科学院 經濟法學研究所가 1955년에 발행한 8.15 해방 10주년 기념 法學論文集에 수록된 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위대한 소련군대의 무력에 의하여 조선이 일제식민지 통치 기반으로 부터 해방된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산생 발전된 인민민주주의적 법규범들과 법적 제도들은 조선혁명의 제임무를 실현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 앞에 제기되는 제반 정치 경제적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복무하여 왔으며 또 복무하고 있다. 공화국이 승인하여 적용하는 국제법의 규범들과 원칙 제도들은 공화국의 국내법과는 다른 일련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나 역시 당과 정부의 이상과 같은 제반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놓았으며 또 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8.15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은 혁명의 제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인민정권과 국내법을 공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또한 국제법의 민주주의적 규범들과 원칙 제도들을 리용하였으며 그의 공고 발전을 위하여 시종일관 투쟁하여 왔다」.

법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공통의 기준이 있기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共產圈과 自由陣營 사이에는 공통의 목표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양자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투쟁관계가 되지 않을 수 없고 共產圈에서는

自由陣營과의 관계에서 국제법도 투쟁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분쟁 해결에 있어 국제재판 보다는 협상에 左袒하고 있는 것에서도 窺知할 수 있다. 북피는 위에서 본 것 처럼 모든 국제분쟁은 협상에 의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1974년 6월 20일에서 8월 29일까지 베네수엘라의 首都 카라카스에서 있는 제 3차 UN 해양법회의 第2會期 때에도 隣接國 또는 對向國 간의 경제수역의 경제획정은 等距離線 또는 中間線의 원칙에 따라 「협약에 의해」(by consultation)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註 100)

이러한 것은 소련이나註 101) 중공도 마찬가지이다. 중공은 1973년 7월 16일에 UN 海底平和利用委員會에 제출한 作業文書에서 연안국은 「그 특별한 지리적 條件에 따라」(according to its - specific geographical conditions) 대륙붕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利害關係國으로 부터 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평등한 입장에서 의 협의」(consultations on an equal footing)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力說한 바 있다註 102).



- 註 -

- (1) 이 점에 관해서는 특히 Hans Kelsen, *The Communist Theory of Law*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5), pp. 40 ~ 41 및 R. N. Carew Hu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Baltimore: Penguin Books, 1963), p. 95 参照.
- (2) 「레닌」의 國家·法理論에 관한 보다 상세한 說明을 위해서는 Carl Cohen, ed.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New York: Random House, 1963), p. 177 및 金雲竜, 「北韓 憲法秩序의 理論과 實際」, *北韓法律 体系研究* (高大亞細亞問題 研究所刊, 1972), pp. 12 ~ 18 参照.
- (3) Lenin, "State and Revolution", in Carl Cohen, *op. cit.*, p. 181.
- (4) *Ibid.*, pp. 180 ~ 89
- (5) *Ibid.*, pp. 191 ~ 92
- (6) *Ibid.*, pp. 188, 198 ~ 99.
- (7) 이 점에 관해서는 Vernon V. Aspaturian, "The Contemporary Doctrine of the Soviet State and its philosophical Foundations", *The Am. Pol. Sci. Rev.*, XLVIII (Dec. 1954), p. 1032 参照.
- (8) 이 점과 關聯하여 姜求真, 「北韓法の 研究」, (서울: 博英社, 1975), p. 21 以下 参照.

- (9) 이 점에 관해서는 특히 “社会主義法 にかんする キム・イルソン主席の 理論 (I)”, 朝鮮學術通報 (在日本朝鮮人科學者協會 刊), Vol. X, No. 2 (1973), pp. 38 ~ 39 參照.
- (10) “社会主義法 にかんする キム・イルソン主席の 理論 (完)”, 朝鮮學術通報 (在日本朝鮮人科學者協會 刊), Vol. X, No. 6 (1973), p. 5 參照.
- (11) 이 점에 관해서는 Harold J. Berman, Justice in the U.S. S.R. (New York: Vintage Books, Random House, 1963), pp. 101 ~ 110 參照.
- (12) 金日成著作選集, 5卷 (평양: 1972), pp. 470 ~ 72. 한편 이 점과 關聯하여 “社会主義法 にかんする キム・イルソン主席의 理論 (IV)”, 朝鮮學術通報, Vol. X, No. 5 (1973), pp. 64, 66 參照.
- (13) Berman, op. cit., p. 282 參照.
- (14) 이 점에 관해서는 Julian Towster, Political Power in U.S.S.R.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48), p. 19 및 金雲竜, “北韓憲法秩序의 理論과 實際”, 「北韓法律體系研究」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72), pp. 43 ~ 44 參照.
- (14) 社会主義 國家에서의 이러한 法理論에 관해서는 Michael Bothe, “The 1968 Constitution of East Germany”,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17 (1968), p. 283 參照.
- (15) 이 점에 관해서는 金雲竜, 前掲書, pp. 78 ~ 9 參照.

- (17) 社会主義 國家에서의 이러한 權利概念에 關해서는 ゲ・グエ、
マリツエフ, 'ソビエト市民の 主觀的權利, 義務と利益の 相互關
係', 立命館法学, 60.70 合併号 (1966), pp.522 ~ 23 参照.
- (18) 이 點에 關聯하여 Berman, op.cit., p.346 参照.
- (19) 이러한 뜻에서 北韓法에서 「經濟契約」 또는 「計劃契約」이
라는 用語를 많이 쓴다. 서창섭, '공화국 민법의 발전',
「우리나라 법의 발전」(평양, 1960), p.25 参照.
- (20) 黨과 國家機構의 二元構造에 關해서는 金雲竜, 前掲書, pp.50
~ 60 参照.
- (21) 金日成, '우리 당 사법정책을 觀찰하기 위하여', 「金日成著
作選集」, 2卷(평양: 1968), p.144.
- (22) 이것을 資本主義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많다.
- (23) Harold J. Berman, Soviet Perspectives on Chinese Law,
in J. A. Cohen (ed), Contemporary Chinese Law, 1970, p.315.
- (24) 「데이비드」教授는, 倫理的·精神的秩序, 政治思想的秩序, 經濟的
秩序의 三要素가 法分類의 基準이 된다고 하여, 世界의 法系
를 ① 로마·게만系 ② 社会主義法 ③ Common Law ④
宗敎的·傳統的 法の 넷으로 나누며, 인도法, 이스렘法, 中共法
을 네번째의 法系 속에 넣고 있다. (René David & John
E. C. Brienley, Major Legal System in the World Today,
1968, p.11 以下 参照.
- (25) 『김일성선집』 第5卷, 朝鮮勞動黨出版社, 1963, p.448.

- (26) 蘇聯에서는, 1930年代 初, 經濟法部門을 設置해서 行政法을 廢止하자는 理論이 일어나서, 한때 이것이 主流를 이루었으나, 곧 그것은 전면적으로 打倒되었다. 그러나 二次大戰 뒤, 1950年代 중반부터 다시 法部門論爭이 活潑해지고, 民法典 制定을 앞에 두고 經濟法論이 또 일어난 바 있다.
- (27) 前掲 『김일성선집』, p.452.
- (28) 조일호, 『조선가족법』, 교육도서출판사, 1958, p.46.
- (29) 이 點에 관해서는 金雲竜, 前掲書, p.43 参照.
- (30) 이 人民民主主義의 意味內容과 이 段階에서의 北韓憲法에 관해서는 金雲竜, 前掲書, pp.37 ~ 46, 67 ~ 83 参照.
- (31) 이 民主的 中央集權制의 보다 상세한 內容에 관해서는 Carew Hunt, op.cit., p.189 및 金雲竜, 前掲書, pp.60 以下 参照.
- (32) 이 點에 관하여서는 “社会主義法じ ガリちう キム、イルソン 主席の 理論(完)”, 朝鮮學術通報, Vol.X, No.6(1973), p.4 参照.
- (33) 이처럼 당연한 것을 北韓憲法은 「國家는 낡은 社會의 遺物인 税金制度를 完全히 없앤다」(33條)고 거창하게 宣傳하고 있다.
- (34) 北韓憲法의 經濟條項에 관해서는 특히 田村武夫, “朝鮮の新しし、社会主義憲法じつし、て”, 比較法研究, 35(1974), pp.132 ~ 33 参照.
- (35) 田村武夫, 前掲論文, p.135 参照.
- (36) 이러한 權利概念에 관하여서는 エヌ・イ・マトウゾフ, “市民の

- 主觀的權利의 理論의 諸問題”，立命館法學，69.70 合併号 (1966)
pp.508 ~ 510 参照.
- (37) 이들 「權利」에 관해서는 北韓憲法 第 51 条 내지 67 条 参照.
- (38) 이러한 点과 關聯하여, 蘇聯의 마트우즈프, 前掲論文, p.509에
서 個人의 所有權을 「物質的 福祉를 利用할 수 있는 事實
的 可能性」이라고 한 말을 음미하여 볼 必要가 있겠다.
- (39) 이 点과 關聯하여 게·우에·마리쯔에프, ソビエト市民의 主觀
的權利, 義務よ利益의 相互關係」, 立命館法學, 69.70 合併号
(1966), p.521 参照.
- (40) Bothe, op.cit., p.283.
- (41) 이 点과 關聯하여 金雲竜, 前掲書, pp.78 ~ 81 参照.
- (42) 이 点에 관해서는 특히 北韓憲法 第 105 条 5 号에 열거되어
있는 순서를 參考할 必要가 있다.
- (43) 이 点과 關聯하여 尹世昌, “北韓人民政權의 行政法秩序”, 北
韓法律行政論叢, 第 2 輯 (高大法律行政研究所, 1973), pp.50 ~ 51
参照.
- (44) 김상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國家행정행위에 관한
문제”, 법학연구, 2 권 (1956), p.9 参照.
- (45) 이 点에 관하여서는 尹世昌, 前掲論文, pp.52 ~ 53 参照.
- (46) 김재교, 「공화국토지법의 발전」 『우리나라 법의 발전』, 국
립출판소, 1960, p.58.

- (47) 道路는 그 規模와 事명에 따라, 고속도로와 1급부터 6급까지의 것으로 나누어지며, 도로의 건설과 보호관리도 등급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토지법 제 56조 參照).
- (48) 자세한 내용은, 서창섭, 「민법전초안토의사업의 방조를 위하여 공화국민법전체제에 대하여」 (『민주사법』제 5호, 사법성 <<민주사법>>편찬위원회, 1959, 평양, pp.28 ~ 35 參照).
- (49) 『김일성저작선집』 제 2권, 1968, p.144.
- (50) 北韓에서는 蘇聯民法을 修正主義法으로 보고, 부르조아民法과 함께 묶어 비난하고 있다 (『민법 I』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p.8).
- (51) 前掲「民法 I」, p.79.
- (52) 1964年의 「소비에트聯邦과 聯邦構成共和國의 民事立法의 原則」을, 第 4編에서 著作權, 第 5編에서 發見法 그리고 第 6編에서 發明法을 담고 있다.
- (53) 拙稿, 「北韓에 있어서의 私有財産」 『北韓法律行政論叢』第 2輯, 1973, 高大法律行政研究所, pp.296 ~ 7..
- (54) 拙著, 『北韓婚姻法』, 高麗大學校出版部, 1977, pp.157 ~ 9.
- (55) 拙著, 前掲書, pp.113 ~ 8.
- (56) 蘇聯婚姻家族法 第 19條第 1項.
- (57) 한락규, 「프로레타리아 獨裁를 強化하기 위한 武器로서의 共和國刑法」, 「共和國法은 社會主義 建設의 強力한 武器」 (平

壤：科学院 出版社，1964), p.79.

(58) 심현상著, "朝鮮刑法解説" (平壤：1957), pp.7~13.

(59) 한락규, 前掲書, p.79.

(60) 姜求真, "北韓法の 研究" (서울：博英社, 1975), p.169.

(61) 심현상著, 前掲書, p.14.

레닌著, "國家와 革命" (모스크바, 1951), p.132.

(62) 심현상著, 前掲書 p.18.

(63) 上同

(64) 前掲書, p.21.

(65) 前掲書, p.66.

(66) 한락규, 前掲書, pp.81~85

(67) 심현상著, 前掲書, p.77.

(68) 심현상著, 前掲書, p.83.

(69) 姜求真著, "北韓法の 研究" (서울 博英社, 1975), p.185.

(70) 심현상, 前掲書, p.91.

(71) 심현상, 前掲書, p.175.

(72) 심현상, 前掲書, p.190.

(73) 이 점은 犯罪의 未遂를 特別한 規定이 있을때면 処罰하도록
한 韓國刑法의 態度와 相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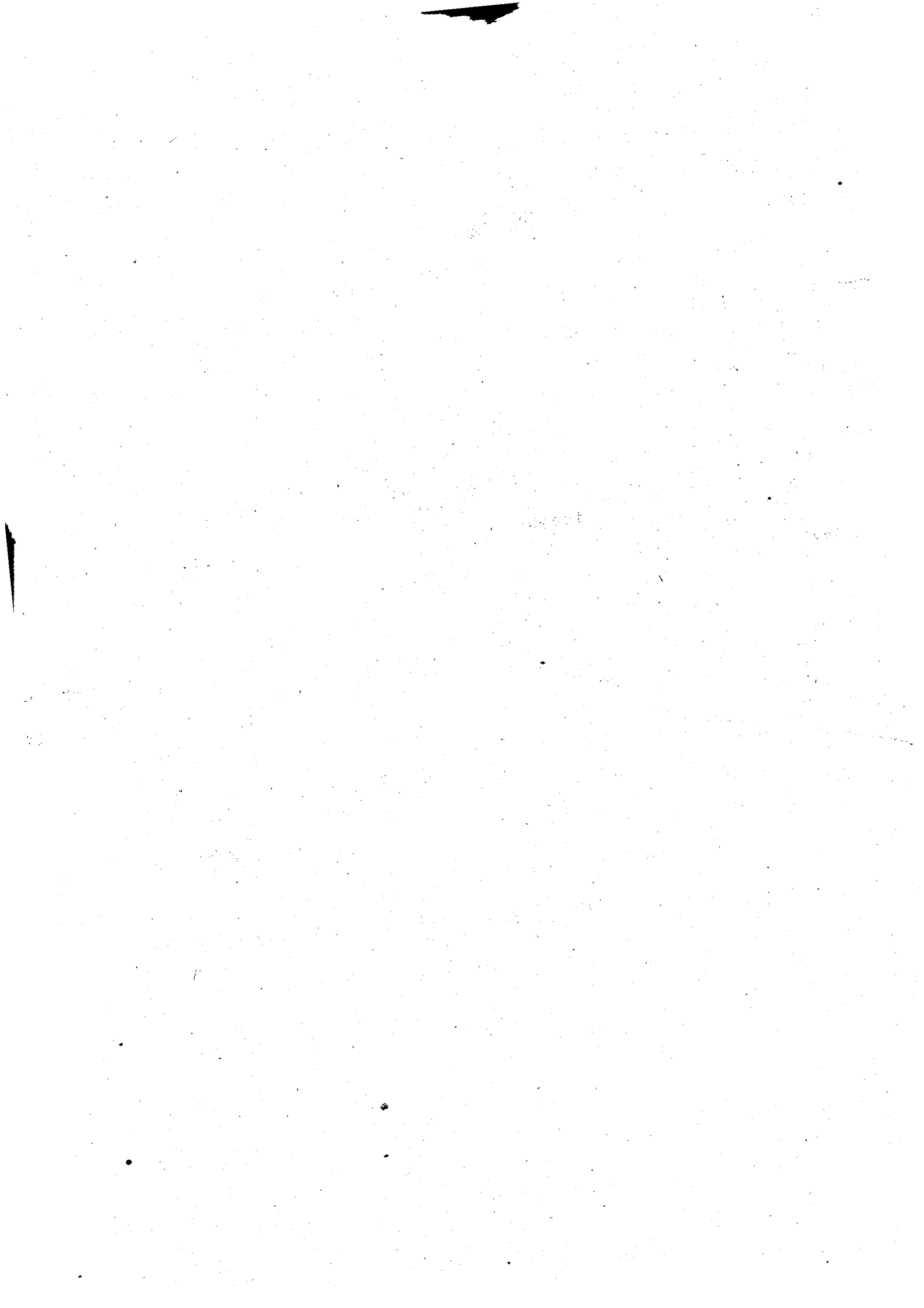
(74) 北韓 刑法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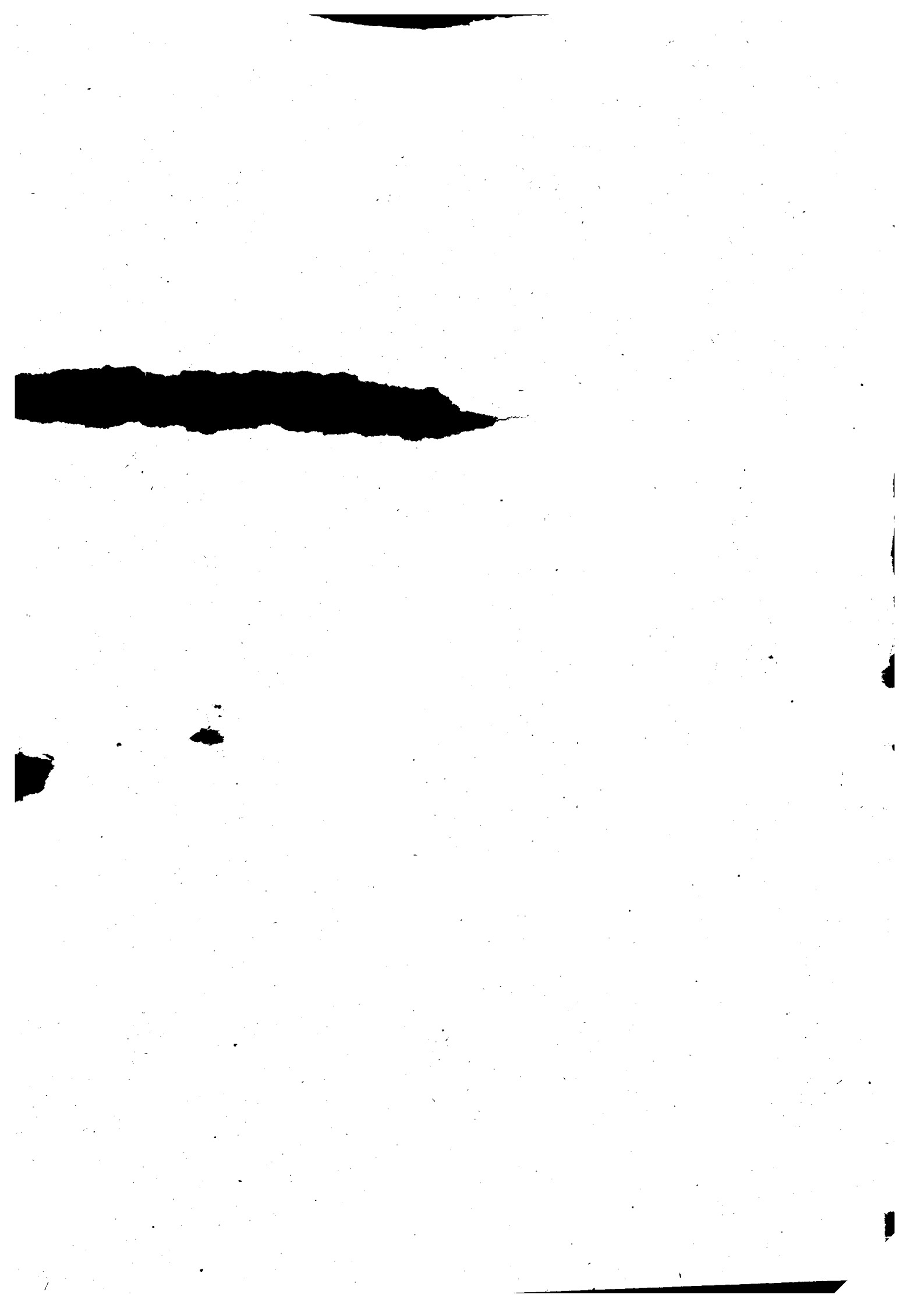
(75) 北韓 刑法 § 53~ § 58, § 6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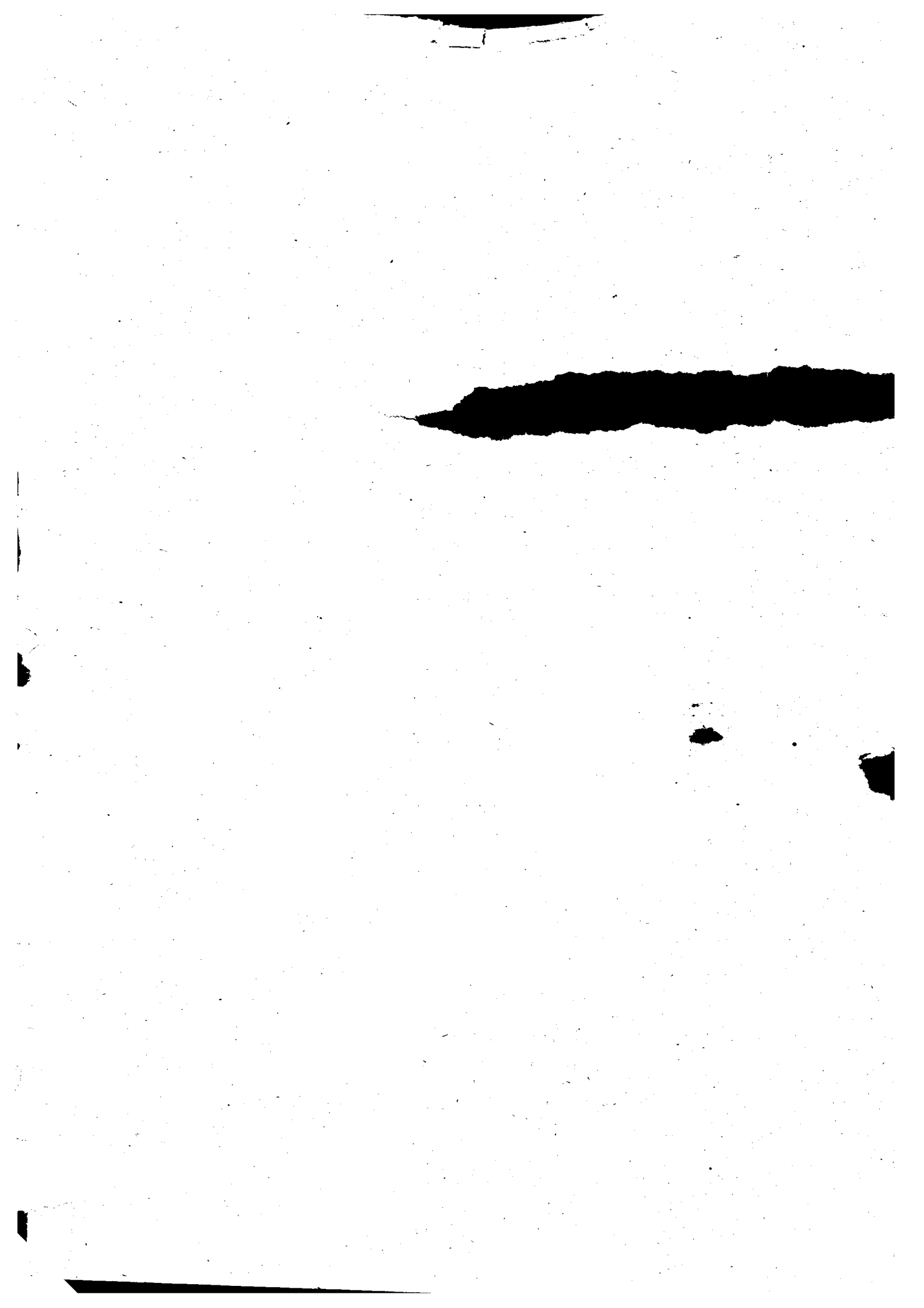
(76) 이에 관해서는 "司法省 法律學校 法律講座 人身侵害에 관한

- 罪의 解説 (1) 및 (2) * 民主司法, 제 7 호 (1959.7.25) 및 제 8 호 (1959.8.25) 参照.
- (77) 이에 관해서는 * 平壤法律大学 法律講座, 公民의 財産侵害에 관한 罪의 解説 * 「民主司法」 제 9 호 (1959.9.25) p.30 以下 参照.
- (78) 이에 관하여는 H.J.Berman and M.Kerner, Soviet Military Law Administration (Cambridge, Mass, 1955) 参照.
- (79) 「공화국민사소송법전 체제에 대하여」 『민주사법』 제 6 호 (1959) 사법성민주사법편찬위원회, 1959, p.28.
- (80) 同上, p.30.
- (81) 同上, p.31.
- (82) 内外通信 (資料版), 第 50 号, 1977 年 12 月 14 日 参照.
- (83) 上同, 제 87 호, 1978 年 8 月 30 日 参照.
- (84) 上同.
- (85) 北韓, 1978 年 8 月 117 면 参照.
- (86) 金燦奎, 國際法에 대한 北傀의 態度, 国土統一院 (국통정 77-12-1369), 1977 年 5 面 参照.
- (87) 北韓, 1978 年 8 月, 118 面 参照.
- (88) 上同.
- (89) 1977 年の 漁業에 관한 暫定合意書에 대해서는 金燦奎 「海洋法に對ちり北韓の態度」 アジアエ論 1978 年 9 月号 238 項 参照.

- (90) 北韓, 1978年9月, 136면 参照.
- (91) 内外通信(資料版), 제 84호, 1978年 8月9日 参照.
- (92) 上同.
- (93) 上同.
- (94) 上同.
- (95) 上同.
- (96) G.I.Tunkin, Theory of International Law,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by William E. Butler (1974), p.4.
- (97) Ibid., p.14.
- (98) Ibid., p.431.
- (99) Ibid., p.21.
- (100)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Official Records (1975), Vol. II, p.215.
- (101) 국제재판에 대한 蘇聯의 態度에 대해서는 金燦奎 「國際司法
裁判所の 強制管轄權에 대한 諸國家의 態度」 大韓國際法學會
論叢 1977年3月 15~21면 参照.
- (102) 金燦奎 「大陸棚을 圍繞한 國際力學關係」 國際問題 1976年
3月 58~64年 参照.







A General Survey
on North Korean Law

- On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Positive Law -

Tal-Kon Choi

(Resum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troduce a general survey of North Korean Law. With its own particular social structure, North Korea has a particular legal system which is different not merely from that of Korea but also from that of the Soviet Union, one of the same socialist states. North Korean legal system is not so easy for us to understand without a systematic study.

In this thesis, we investigate North Korean legal system systematically and summarize its main features. First of all we divide the contents of this thesis into the introductory part and the main part. In the introductory part, we describe the basis, function and special features of North Korean Law in its theoretical aspect, and we also investigate intensively the source of systematization of Law. In the main part, we

choose some of the most basically important positive laws to find out their basic principle and special features. In the main part, by mentioning international Law, we intend to help understand North Korean legal system, though this may not conduce much to the explanation of the positive law.

In this thesis we have acquired some results as follows.

First of all, North Korean Law has undergone many changes all the time since its establishment. At the time when the North Korean regime was established, it took many theories and techniques directly from the legal system of the Soviet Union and at times even without criticism. But now that North Korea comes to keep the Soviet Union at a respectful distance politically, such tendency is reflected in the legal aspect.

Secondly, its desire to establish its own legal system independent of the influence of the Soviet Union, far from contributing to its legal system for the foundation of its legal theory, which has been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at of the Soviet Union, is on danger of being demolished.

Thirdly, although many written laws have been promulgated ever since, they are not sufficiently numerous to be established

systematically. And accordingly, legal consciousness which fills up the legal gap is widely used as legal source.

Fourthly, in spite of the so-called practice of "Juchae" (subjectivity) which is emphasized especially these days, the contents of North Korean Law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the echo of the Soviet Union's legal system and the other relatively peculiar to its own. We can find such a tendency not only in its individual provisions but also in its special laws.

The land law and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law, for example, belong to the latter group and many technical provisions including code of legal procedure belong to the former group. But those that belong to former group are much more superior in number to the other.

Judging from this, we can say that the legal system of the Soviet Union has great influence on that of North Korea, which means that the study of the Soviet Union's legal system is indispensable to the study of North Korean legal system.

As the North Korean Law has the above mentioned particular traits, it is not so easy to understand it. More elaborate understanding and explanation cannot be achieved until we

investigate closely its social change and until we use the
end results in applying and interpreting its legal system.